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

金 東 熙

<서울大學校 法大 教授>

<目 次>	
I. 總 說	
1. 形成時期	5) 死亡保險
가. 勞動災害立法	2. 勞動災害・職業病補償
나. 社會保險	가. 被保護者
다. 家族給與制度	나. 勞動災害 및 職業病의 定義
2. 發展時期	1) 勞動災害의 定義
가. 序論的 考察	2) 職業病의 定義
나.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發達	다. 補償節次
1)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發 達을 慮起한 諸要因	라. 補償
2) 第四共和國에 있어서의 社 會保障制度의 發展	1) 短期的 補償
3) 第五共和國에 있어서의 社 會保障制度의 發展	2) 長期的 補償(年金)
3.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概要	3) 不許容過失 故意의 過失의 경우의 補償
가. 構造的 觀點	3. 家族給與
나. 保護範圍의 增大의 觀點	가. 一般的 考察
II. 一般制度上의 各種給與	1) 被扶養子
1. 社會保險	2) 受給權者와 受給者
가. 受給者의 範圍	3) 家族給與의 算定基礎
1) 強制加入 原則	나. 各給與에 關한 檢討
2) 任意加入	1) 出產手當
나. 所要登錄期間 및 使用期間	2) 家族手當
1) 所要登錄期間	3) 其他手當
2) 所要履用期間	III. 社會保障의 運營機構 및 財源
다. 社會保險上의 各種給與	1. 運營機構 (一般制度의 運營機構)
1) 疾病保險	가. 1967年 改革以前의 運營機構
2) 出產保險	나. 1967年 改革以後의 運營機構
3) 障碍保險	1) 組織
4) 老齡保險	2) 運營
	2. 社會保障의 財源 가. 保險料

1) 保險料의 算定基礎로서의 賃金	나. 制度間移轉收入 및 國庫支出 金
2) 最低額 및 最高額	1) 制度間移轉收入
3) 部門別 保險料	2) 國庫支出金

I. 總 說

오늘날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基本法이라 할 수 있는 1945년 10월 4일자의 大統領令(ordinance)은 제 1조에 社會保障制度를 設置한다고 규정하고 同制度는 「勤勞者 및 그 家族에 대하여 取得能力을 減少 또는 상실시킬 수 있는 모든 危險(risque)을 保障하고 또한 出產 및 家族負擔을 報償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고 하고 또한 제 3조에서는 同制度의 「새로운 受益者에의 擴大 및 既存의 法令에 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危險에 대한 適用範圍의 擴大」를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基本原則을 밝힌 1945년의 大統領令에 이어 以後 多數의 法令에 의하여 혹은 제 1조의 내용이 具體化되고 혹은 제 3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受益者 또는 適用對象으로서의 危險의 範圍가 擴大되어 가면서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는 形成・發達되어 오늘날의 다소 지나치게 복잡하기는 하나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도의 組織을 구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社會保障體制는 그 組織 또는 制度面으로는 客觀的 觀點에서 보면 어느정도 不必要하게 복잡한 構造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同制度가 受益者 전체를 포함하는 單一組織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受益者의 70% 이상을 包含하여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一般制度 외에도 一定의 自營業者를 그 對象으로 하고 있는 自活制度, 鐵山・鐵道・公務員 등을 對象으로 하는 特殊制度 및 農業關係 從事者를 對象으로 하는 農業制度 등이 並存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同制度가 부여하는 紿與面에서 보면 그 중에 失業保險이 包含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看過할 수 없는 缺點을 除外한다면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는 勞動災害・職業病을 包含하는 醫療保險과 老令保險 및 家族手當의 諸分野에서 상당히 實質的인 紿與를 實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는 二次大戰 以後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發端은 19세기 後半 및 20세기 初頭의 몇 가지

立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以下 本稿의 總說部分에서는 먼저 19세기 以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生成・發展에 관하여 檢討하고자 한다.

프랑스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의 生成 및 發展에 관하여는 다소 人爲的 이기는 하나 이를 대체로 다음의 二時期로 區分하여 考察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第一時期는 19세기 後半부터 第二次大戰에 이르기까지의 것으로 이時期에는 특히 勞動災害, 社會保險, 家族手當에 관한 諸立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立法은 勞動者에 대하여 보다 나은 保護를 부여하려는 意圖에서 그 初期的인 對應策이 講究되었다는 점에서 그 基本的 特徵을 찾을 수 있다.

그 第二時期는 第一時期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것으로 同時期는 진정한 意味의 社會保障政策의 採擇 및 發展에 의하여 特徵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時期에 있어서는 第一時期에 나타난 初期的인 對應策이 새로운 對應策에 의하여 代替・補完되고 또한 그 保護對象도 새로운 社會階層에도 擴大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I. 形成時期

구라카에 있어서 18세기 以後의 產業革命과 더불어 새로운 社會階層으로서 勞動者階層이 나타나게 되는 바, 이들의 生活은 一般的으로 매우 비참한 것이다. 그것은 當時의 支配的 思想이던 自由主義哲學下에서는 人間의 労動은 단순한 商品으로 간주되어 그 賃金은 需要供給의 原則에 의하여 決定되었던 결과로 그것은 그 基礎에 있어서 이미 不充分한 것이었다. 더욱이 労動者가 疾病, 廉疾이나 또는 失業으로 労動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그의 唯一한 收入源은 상실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言及해야 할 것은 労動災害・職業病의 문제로서 특히 前者は 주로 未熟한 技術 및 勞動者の 注意力を 鈍化시키는 長時間의 労動(1日 14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에 基因하여 頻發하던 것으로 労動者에게는 그 生活에 대한 가장 危害의인 要因이 있음을 물론이다. 이 경우 被害者는 使用者的 過失에 基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었으나 事故의 原因이 大部分의 경우 소위 「不明原因」에 基因한 것으로 되어 使用者過失의 立證은 實體에 있어서는 지극히 곤란乃至는 不可能한 것이었다. 이러한 부

정적 결과를 완화 내지는 是正하기 위하여 19세기 末에서 20세기 初頭에 걸쳐 一定의 유럽國에서 採擇된 것이 勞動災害補償立法이 있다. (이태리 1883년 法律, 프랑스 1898년 法律, 벨기에 및 폴란드 1903년 法律)

가. 勞動災害立法

1) 初期立法의 基本原理

프랑스에서 1898년 4월 9일자와의 法律로 採擇된 勞動災害에 관한 法은 그 내용上 基本的으로 다음에 두가지 側面에 의하여 特定지워 진다고 할 수 있다⁽¹⁾. 그것은 먼저 使用者責任의 要件의 側面에서는 그 补償責任의 發生에 있어 過失을 立證할 必要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同法律의 適用對象으로 되는 企業, 즉 工業的 企業에 있어서는 使用者 責任은 自動的인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는 機械化된 生產方式으로부터 利益을 얻고 있는 使用者는 職業經營의 결과 發生한 災害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危險責任理念의 制度的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責任의 範圍에 관한 限 上述한 使用者의 补償責任은 實際 發生한 損害에 對應되는 것이 아닌 定額拂制이 있고 또한 被害者가 使用者의 過失을 立證할 수 있는 경우에도 使用者에 대한 民事上의 損害賠償請求는 배제되었던 것이다.

2) 勞動災害立法의 發展

前述한 1898年의 勞動災害立法은 다음의 두가지 側面에서 發展을 보게 되었다.

(a) 適用範圍

1898年の 法律의 適用對象은 工業的 企業에 限定되어 있었으나 以後 一定의 法律에 의하여 모든 企業에 擴大되게 되었고 다시 1919年에는 關係一覽表에 列舉된 一定數의 職業病에도 그 保護가 擴大되었다.

(b) 补償方法

1898年 法律에 의하여 使用者의 危險責任이 採擇됨에 따라 大部分의 使用者は 私保險에의 加入에 의하여 公극적인 被害補償에 對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方法이 一般化됨에 따라 1905年의 法律은 被害者에 의한 保險會社에 대한 直接的인 补償請求權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1) 勞動災害立法의 基本原則인 使用者의 無過失責任原則은 行政法 分野에서는 1895. 6. 21자의 Conseil d'Etat의 Cames判決에 의하여 定立된 것으로 이러한 Cames判決이 以後의 關係立法에 至大한 영향을 미쳤음을 否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勞動災害 및 職業病에 대한 補償에 있어 使用者와 被害者間의 直接的 關係는 排除되고 關係保險金庫만이 保償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社會保險

社會保障制度는 독일에서 먼저 生成된 것으로 그것은 당시 左翼인 社會民主黨의 成長을 우려한 비스마르크가 그 力度를 阻止하고 基盤을 根絕하려는 意圖에서 提唱한 것으로 同制度는 共濟組合의 應用으로서 1883에서 1889년에 걸쳐 災害保險, 疾病保險, 老齡 및 廢疾保險을 包含하고 있었다⁽²⁾.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는 우선 特定部門勞動者에 固有한 制度 즉 오늘날에 特別制度로 呼稱되는 것이 一定時期에 形成됨으로써 始作되었다.

以後 1921年에 이에 관한 法律案이 議會에 上程되었으며⁽³⁾ 오랜 審議過程을 거쳐 1928年에 첫번째 法律이 可決되었으나 同法律은 勞動者, 農用主, 農業界, 醫師 등의 反對에 부딛치게 되어 1930.4.30.에 其間에 제기된 諸問題를 감안하여 새로운 法律이 採擇되게 되었다.

同法律에 의거하여 設置된 프랑스 社會保險의 基本的인 特징은 다음과 같다.

1) 被保險者

工業 및 商業部門의 被用者로서 賃金이 一定額을 상회하지 않는 者로 하고(同加入上限은 1942年 廢止) 農業勞動者에 대하여는 별도로 特別制度를 두기로 한다.

2) 對象으로서의 危險

社會保險은 疾病, 出產, 廢疾, 老齡, 死亡 등을 對象으로 하는 一定部門

(2) 疾病保險 (1883), 災害保險 (1884), 老齡 및 廢疾保險 (1889) 이와 관련하여 1881年에 비스마르크의 議會에 대한 媒塞지는 現代의 社會保障制度의 發展에 있어서는 한 單元을 劃하는 것으로 동메세지에서 비스마르크는 國家의 任務는 다만 既存의 利益을 保護하는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同시에 適切한 制度와 諸手段을 動員하여 모든 國家構成員, 尤其 弱者와 貧者의 福祉를 增進함에도 있는 것이라고 主唱했는 바, 이것은 當時로서는 革命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第一次 大戰後 당시 이미 독일의 社會保險制度가 適用되고 있던 「알사쓰로렌」 地方이 프랑스에 返回되자 프랑스 政府는 同地方의 社會保險制度를 廢止할 것인가 또는 이를 프랑스 全域에 一般化할 것인가의 문제에 逢着하게 되었던 바, 결국 後者の 方法이 채택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21년의 法律案인 것이다.

을 包括한다.

3) 財 源

被用者 및 使用者は 各各 被用者 賃金의 4%에 相當하는 保險料를 支拂하는 것으로 한다.

4) 運營組織

被保險者는 設立된 社會保險金庫의 어느 것에 加入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자유스러웠고 金庫의 設立은 原則的으로 私的發意에 맡겨진다. 縣이나 道單位로 一個의 金庫가 公的으로 設置되어 特定金庫에의 選好를 가지지 아니하는 모든 被保險者를 加入시킨다. 이렇게 設置된 金庫는 社會保險의 對象인 모든 危險에 관한 管理責任을 지고 있어서 소위 金庫의 專門化的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金庫의 行政的 分散化라는 현상은 회피할 수 있었으나 反面에 被保險에 대하여 金庫의 選擇權의 인정 결과로 지나치게 多樣한 性格의 金庫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다. 家族給與制度

프랑스에 있어서의 家族給與制度는 初期에는 賃金概念의 應用乃至는 補完形式으로 나타났던 것이다.前述한 바와 같이 19세기에 있어서의 賃金은 勞動者가 提供한 勞動의 商品價值의 代價로서 觀念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賃金額을 勞動者의 家族의 負擔에 따라 調整한다는 것은 想定될 수 없었던 것이다.

然이나 公平의 觀念 및 基督教의 影響을 받아 第一次世界大戰 전부터 多數의 使用者は 子女의 養育을 負擔하고 있는 勞動者에 보다 높은 賃金을 支拂하기로 決定하였다. 이러한 소위 「超賃金」概念을 採擇한 使用者들은 積極적인 負擔을 擴散하기 위하여 이들相互間에 補償金庫를 設置하였다.

이러한 使用者の 自然發生的인 움직임은 一次大戰後에도 계속 發展하여 1930年에는 232個의 補償金庫에 30,000人의 使用者が 加入하고 200萬人の 勞動者가 그 組織下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私的發意에서의 集團的組織화에의 趨移에 비추어 1932.3.11.의 法律은 初期의 家族手當을 勞動者를 위한 強制的인 것으로 하고 工業的, 商工業的 및 農業的 事業의 使用者에 대하여 公的으로 認可된 補償金庫에의 加入을 義務化하기에 이르렀다.

家族手當이 超賃金으로 把握되었던 初期의 觀念이 오늘날의 그것으로 摻

移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그 過程에 있어서는 家族手當은 被用者에 대해서만 支拂되있고 또한 그것은 特別한 報酬라는 形態로 支拂되있기 때문에 被用者가 勞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勞動者가 그를 보다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支拂되지 않았던 것이다.

프랑스의 社會保險에 있어서는 그의 原則이 이미 유럽諸國에서 採擇된 時期에 비로서 그 制度化를 實現했으므로 이 方面에 있어서는 상당히 늦은 것 이었으나 反面에 家族手當에 있어서는 「벨기에」와 함께 先驅者的인 役割을遂行하였다 할 수 있다.

以上에 陳述한 바를 要約하면 社會保障制度는 그 萌芽期에 있어서는 다음의 特性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對象: 다만 被用者만을 위한一定의 保護措置가 정비되었는 바, 그것은 被用者の 特殊한 經濟的 不安定狀態에 의하여 正當化되는 것이다.
- ② 方法: 그것은 基本的으로 派生된 對應策으로 즉 私法上의 다음의 傳統的인 對應策의 應用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다.
 - 災害立法에 의한賠償責任制度의 應用
 - 社會保險立法에 의한 共濟組合의 應用
 - 家族手當法에 의한 賃金의 應用

2. 發展時期

가. 序論的 考察

이 時期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는 우선 그 目的 및 方法의 면에 있어 前期에 비하여 커다란 修定이 加하여지고 있다. 目的面에 있어서는 社會保障을 모든 社會階層에로 擴大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方法面에 있어서는 從前의 派生的 方法에 代替하여 獨創的 方法이 採擇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理念面으로는 社會保障觀念의 革新을 보게 되어 그것은 社會各構成員의 權利로서 인정되게 된 결과로 이 時期에 있어서 社會保障은 國民紐帶에 의거한 國民所得의 조화있는 再分配에 의하여 社會構成員各者에 대하여 經濟的 安定의 보장을 目的으로 하는 公役務(Service public)로서 점진적으로 設置되는 것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一次大戰을 前後하여 社會保障에 관한 基本法이 採擇

되게 된다. 즉 美國에서 1935년 8월 14일 社會保障法(Social Security Act)이 制定되고 뉴질랜드에서는 1938년 以來 社會保障制度가 形成되며 또한 英國에 있어서는 1942년에 發表된 Beveridge 報告書에 基하여⁽⁴⁾ 1945년, 1946년의 立法에 의하여 오늘날의 社會保障制度의 基本組織이 定立되는 것이다.

프랑스에 있어서는一般的으로는 二次大戰後 앞에서 약간 言及한 1945년의 大統領令에 의하여 비로소 社會保障制度는 基本的인 革新을 보게 된다. 다만, 家族手當에 있어서는 이미 1938년과 1939년에 이미 基本的으로 오늘날의 體制를 갖추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 잠시 檢討한 후에 1945年 以後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의 發展에 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프랑스에 있어서 1935년 以來 死亡率이 出生率을 上回하게 되었다. 이러한 人口問題의 壓力下에서 1938년 및 1939년에 걸쳐 家族手當制度는大幅의 인 修正을 보게 되는 바, 특히 1939년 7월 29일자의 家族法典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主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먼저 同法典에 의거하여 家族手當制度의 通用對象은 從來의 賃金勞動者에 限定되지 않고 自由業者, 自營業者라는 使用者에까지 擴大되어 實質的으로는 全國民의인 것으로 되었다.

다음에 家族手當은 賃金勞動者에 대하여 勞動不能時에도 支給되게 되었다. 이것은 위의 對象擴大라는 面과 함께 고찰하여 보면 家族手當과 初期의 超賃金概念과의 分離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主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라

(4) Beveridge 報告書는 이후 모든 社會保障計劃樹立者에게 필수적인 基礎資料가 되는 것으로 同報告書는 世界社會保障史에 主要한 紀元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 報告書는 다음의 消極, 積極의 두 가지 面을 가지고 있다. 먼저 同報告書는 1911년 國民保險法에 의거한 既存制度의 不充分性이나 缺陷을 全幅의 으로 补完, 是定하고 있다. 그런데 從來의 制度는 그 對象에 있어 限定의 이미 (賃金勞動者에만 적용) 運營機構의 面에 있어서는 相互 分離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 同報告書는 다음의 基本原理에 基하여 새로운 計劃을 提案하고 있는 바, 그것은 現代社會는 貧困을 除去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것은 또한 計劃化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① 첫째豫防措置가 事件의 补償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补償政策으로理解되는 社會保障은 Beveridge에 의하면 그의 完全雇用政策이라든가 保健政策을 包括한 全體의 하나의 特殊部分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는 醫療事業은 國營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本來의 意味의 社會保障은 社會階層과 職業의 區別없이 모든 國民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危險에 대한 給與는 社會的 最低限에서 決定되고 그것으로 不充分한 경우에는 私保險에 의하여 补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이러한 社會保障이 行政的으로는 國營化되고 또한 單一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할 것이다.

나.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發達

프랑스 社會保障制度는 앞에서 言及한 몇몇 國家에 비해서는 어느정도 그 發達이 遲延되어 二次大戰 以後에야 비로소 그 理念, 對象 및 組織面에서一大革新을 이루어 本格的인 發達을 보게 된다. 여기서는 먼저 이러한革新을 惹起한 諸要因에 관하여 간단히 言及하고 다음에 그 發達過程을 第四共和國 및 第五共和國時代로 區分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發達을 惹起한 諸要因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要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ㄱ. 人口的 要因

나치 占領下에 있어서의 비참한 生活條件에 基因한 프랑스人の 惡化된 健康狀態와 또한 人的 資源의 造成 및 發達을 助長하여야 하는 必要性에 따라 保健 및 家族分野에 있어서 特別한 努力이 要請되었다.

ㄴ. 經濟的 要因

戰爭의 餘波로 계속된 貨幣價值의 下落으로 經濟的 安定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고 그것은 특히 老齡者에 있어서는 보다 重大한 것이었다.

ㄷ. 社會的 要因

戰後 政治的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的 次元에 있어서도 새로운 民主主義의 基盤을 構築하려는 思潮 내지는 運動과 또한 勞動者의 正當한 要求는 充足시켜 주어야 한다는 基本觀念에 따라 종래의 社會保障制度의革新이 要請되었다.

ㄹ. 國際的 要因

二次大戰中에 있어 社會保障 문제는 先進諸國의 가장 主要한 關心의 하나로 대두되었던 바 프랑스도 이러한 움직임에 냉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附記할 것은 「社會保障에의 權利」는 基本人權의 하나로서 世界人權宣言에 規定되어 있다는 점이다.

2) 第四共和國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의 發展

ㄱ. 第二次大戰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各國에서 社會保障 문제에 대한 關心을 불러 일으켰던 바 프랑스에서도 戰爭末期부터 戰後에 걸쳐 社會保障計劃의 樹立作業이 進行되어 當時 勞動部의 高級官吏인 Pierre Laroque를 中心으로 하여 同計劃이 준비되어서 1945년 7월臨時諮詢會議를 거쳐 同

年 10월에 公布된 것이 本稿의 前項에서 言及한 바 있는 「社會保障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인 것이다.

그런데 同令은 제 1조에서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人的, 物的 適用對象을 規定하고 이어서 「社會保障은 社會保障, 勞動災害 및 職業病, 老齡被用者手當의 紙與業務 및 家族手當給與 業務를…確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從前에 施行되고 있던 社會保險法, 勞動災害補償法, 家族手當法 및 老齡被用者手當에 관한 諸立法은 1945년의 大統領令에 의하여 統合되게 되었다. 다만 記述한 바와 같이 1945년 10월 4일의 大統領令은 社會保障에 관한 總則的 規定에 不過한 것으로 同令은 다음의 諸立法에 의하여 補完되고 있다. 즉 1930년 保險法에 存在하는 것으로서 「商工業被用者에 適用되는 社會保險制度를 規定한 1945년 10월 19일의 大統領令」, 1898년 勞動災害補償法에 對應하는 것으로서 「勞動災害, 職業病에 관한 立法을 修正, 統合하고 이를 社會保障組織에 統合시키기 위한 1945년 10월 19일의 大統領令」 및 1932년의 家族手當立法에 對應하는 것으로서 「家族給與制度를 定한 1946년 8월 22일의 法律과 社會保障의 特別爭訟에 관한 1946년 8월 22일의 法律」 등이 1945년의 大統領令을 具體化하고 있는바, 이들 복잡한 法規定에 의하여 一般制度의 輪廓이 形成되었던 것이다.

느. 二次大戰後에 있어서의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發達에 있어 1945년의 大統領과 함께 主要한 意義를 가지는 다른 하나의立法은 社會保障의 一般化에 관한 1945년 5월 22일의 法律로 同法은 「프랑스本土에 居住하는 프랑스人은 모두…社會保障에 관한 諸立法으로부터 利益을 享受하고 또한 本法에 定한 諸條件의 留保下에 諸立法에 定한 意義에 服從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어 全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總括의이고 一元的인 社會保障制度를 構想하고 있다.

이러한 1946년의 法律의 基本原則에 따라 그때까지 社會保障의 適用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던 여러 社會階層에 관한 多數의 社會保障立法이 나타나게 되어 1948년에는 學生, 1949년에는 職業軍人 및 文筆家, 1954년에는 戰傷病者 및 遺族이 一定限度의 社會保障의 惠澤을 받게 되었다. 또한 從來 社會保障法의 適用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던 農業經營者 및 自營者에 대하여도 새로운立法이 制定되었다. 즉 農業經營者에 대하여 그 老齡保險을 定한 1952년 7월 16일의 法律, 自營業者에 관하여 그 老齡保險을 定한 1948년 1월 17

일의 法律 등이 그러한 것이다.

ㄷ.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戰後 프랑스에 있어서 社會保障制度를 實現하기 위한 1945년 10월 4일의 大統領令 또는 그 一般化에 관한 1946년 5월 22일의 法律에 規定된 基本政策은 多數의 立法에 의하여 상당히 實質的인 實現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然이나 이러한 社會保障의 一元化(unité)에 관한 限 그 實際는 初期의 立法趣旨와는 相異한 方向으로 進展되었음을 看過할 수 없는 事實로서 다음에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1946년 6월 8일의 行政命令(décret)은 從來 獨自의인 社會保險制度를 가지고 있던 一定의 產業 또는 企業의 從業員에 대하여는 새로운 法制가 適用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었고 그것은 暫定의인 것으로 理解되 있으나 以後 그 暫定性은 排除되었고 또한 그 範圍도 擴大되었다. 다음에 家族給與에 관한 限 1945년 및 1946년 立法上의 法制上 및 管理運營上의 基本原則에도 不拘하고 1949년 2월 21일의 法律에 의하여 그 管理運營을 위한 金庫(caisse)는 다른 社會保障給與部門으로부터 分離되었던 것이다.

또한 앞에서 言及한 바 있는 農業經營者나 自營業者에 관한 社會保障立法도 이들 階層만을 對象으로 하는 獨自의인 老齡保險을 創設한 것으로 一元的 社會保障의 理念과는 流離된 分立된 體系를 形成한 것이다.

ㄹ. 以上的 法制의 全般에 걸쳐 實施되는 紿與가 不充分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團體協約에 基한 「補充制度」에 의하여 補充되게 되었던 바, 즉 1947년 3월 14일의 團體協約에 의거하여 形成된 幹部職을 為한 補充制度가 그러한 것이다. 同制度는 以後 社會保障의 對象 전부에 擴大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言及하기로 한다.

ㅁ. 위에서 檢討한 社會保障의 基本制度下에서 以後 多數의 立法에 의하여 社會保障給與의 여려 部門에 걸쳐 많은 改善이 이루어지는 바, 그 重要한 것으로는 다음의 몇가지 事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社會保險部門에 관하여는 長期疾病에 대한 特別配慮를 규정한 1955년 5월 20일의 行政命令, 勞動災害部門에 관하여는 通勤途上의 災害에 관하여 勞動災害에 대하여 提供되는 것과 同一한 紿與의 保障을 定한 1955년 7월 23일의 法律, 家族給與部門에 관하여는 住宅手當을 新設한 1948년 9월 1일의 法律, 産業手當을 新設한 1953년 12월 31일의 法律, 自營業者에 대하여 戰前의 主婦手當을 復活시켜 被用者에 提供되는 單一賃金手當에 對

應하는 保護를 부여한 1955년 8월 5일의 法律 등인 것이다.

이밖에 특히 注目하여야 할 것은 老齡給與에 관하여 「國民連帶基金」을 設置한 1956년 6월 30일의 法律이다. 이 基金은 老齡年金, 老齡手當 등 各種의 老齡給與의 受給者로 老後生活에 充分한 紙與를 保障받지 못하고 있는 65歲 以上的 者에 대하여 附加的인 補充給與를 支給함을 目的으로 하여 設置된 것이다. 老後生活을 國民連帶에 의하여 解決하려는 趣旨에서 初期에 있어 그 財源은 公費로 充當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58년 12월 30일의 大統領令에 의하여 그 財源은 社會保障制度의 財源이 이를 負擔하는 것으로 되어 制度의 意味는 상당히 脊色되었다 하겠다.

3) 第五共和國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의 發展

이 時期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의 發展은 1967년의 改革이 主要한 分岐點이 되므로 여기서도 同年을 기준으로 하여 그 前後를 區分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 1967년 改革以前

프랑스 第五共和에 있어서 政府는 1958년 10월 4일의 憲法에 의하여 行政命令制定權과의 관연에서 매우 廣範한 權限이 부여되었다. 同憲法 제34조는 社會保障 및 勞動法에 관하여 法律은 그 「基本原則」(Principes généraux)만을 정할 수 있는 결과로 政府는 이러한 基本原則以外의 모든 事項에 관하여 行政命令으로 修正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政府는 이러한 權限을 利用하여 徒來의 制度에 對한 調整 내지는 修正을 加하게 되었는 바, 그 主要한 것은 1960년 5월 12일의 行政命令으로 同令은 既存制度에서 그 共濟組合의 性格을 대폭 排除하고 동시에 社會保障金庫에 대한 政府의 監督權도 強化하였던 것이다.

他面에 있어 同時期에는 社會保障의 發展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主要한 措置가 취하여졌던 것이다. 먼저 1961년 1월 21일 法律은 農業經營者를 위한 疾病, 廢疾 및 出產保險을 創設하였으며 또한 1966년 12월 22일의 法律은 이들 階層을 위한 勞動災害保險을 設置하였던 것이다.

農業經營者는 이때까지는 家族給與 및 老齡年金만을 受給하고 있었던 바,前述한 二大立法에 의하여 종래의 社會保障制度上의 하나의 캐다란 空白이 메구어 지게 되었다.

또한 1966년 7월 12일의 法律은 自營業者를 위한 疾病保險을 創設하였던

바, 이들立法은 1945년의 大統領 및 1946년法律의 基本原則인 社會保障의一般化라는 基本精神에 立脚한 그 具體的 實現입니다.

ㄴ. 1967년 改革

政府는 1967년에 이르러 憲法 제38조에 基하여 採擇된 1967년 6월 22일의授權法에 의거하여 同年 8월 21일자의 4個의 大統領에 의하여 從來의 社會保障制度에 대한大幅의 改革을 斷行하게 되었다. 그原因으로서는 大別하여 社會保障一般制度의 財政事情의 惡化와 政府의 一般制度管理機構에 대한信賴感의 減少의 두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制度收支의 長期의 安定化를 實現하고 運營機構上의 改善을 도모하려는 것이 1967년 改革의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行政面 또는 機構面으로는 一般制度에 있어 從來財政問題를 總括하고 있던 全國社會保險金庫에 代替하여 다음의 各社會保障部門에 對應하고 原則의으로 自治權을 가지는 3個의 全國金庫를 設置하였다.

- ① 疾病保險部門—疾病, 出產, 廢疾, 死亡 및 勞動災害와 職業病을 總括
- ② 老齡保險部門
- ③ 家族手當部門

이들 金庫의 中心機關으로서의 理事會는 從來의 選舉에 의하여 選出된理事로 構成되는 것이 아니고 使用者와 被用者 雙方의 가장 代表的인 全國組織이 指名하는 者로 構成되게 되었다. 또한 그 構成比는 勞使同數制가 原則이다.

다음에 財政問題에 관하여는 그 焦點이 되고 있던 疾病保險에 관하여 收支兩面의 對策이 採擇되었다. 즉 收入面에 관하여는 疾病保險의 保險料의 算定, 徵收에 있어 料率의 一部는 上限額의 限度 없이 賃金總額에 걸쳐 算定함으로써 保險料收入을 增大하려고 하였고, 他面 支出에 관하여는 醫療費의 償還率을 從前의 80%에서 70%로 引下함으로써 支出를 抑制하려고 하였다.

然이나 이들措置中의 一部는 1968년 事態로 인하여 部分的인 修正을 보게 되었다. 例컨대 醴療費의 償還率은 70%에서 75% 再調整되었고 被保險者가 負擔하는 保險料率 3.5%에 있어 65歲以上의 高齡勞動者는 2.5%만을 負擔하게 된 사실등이 그러한 것이다.

ㄷ. 1967년의 改革以後

前述한 1967년의 大統領令에 의한 社會保障制度의 大改革 以後에 있어서

도 社會保障의 對象, 紿與의 內容, 運營 또는 基本原則 등에 관하여 多數의 措置가 취하여졌던 바, 이 중에서 重要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家族手當制度는 以後에도 계속 발전되어 遺兒手當, 障碍兒手當, 保育手當, 등이 新設되었다. 그런데 이들 手當은 特定의 家族에 限定된다는 점에서는 프랑스 家族給與制度의 하나의 세로운 方向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醫療費의 償還과의 관련해서는 1971년에 以前까지의 道單位의 協定料金制에 代替하여 全國單位의 協定料金制가 採擇되었다.

③ 農業勞動者에 관하여는 1972년 10월 25일의 法律이 이들 階層을 위한 労動災害保險을 新設하였다.

④ 1945년 大統領令以來의 基本命題인 社會保障의 一般化와 관련하여 主要한 立法으로서는 1974년 12월 24일의 法律을 들 수 있다. 同法은 1978년부터는 모든 프랑스人에 대하여 共通의 基礎的 社會保障給與를 保障함을 最終目標로 하여⁽⁵⁾ 1975년부터 各制度間의 財政的 調整을 규정하고 있다.

3.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概要

앞에서 우리는 19세기 以後에 있어서의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生成, 發展에 관하여 보았으나 다음에서는 이를 배경으로 하면서 오늘날의 制度를 다음의 두가지 觀點에서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가. 構造的觀點

프랑스 社會保障制度는 1946년 大統領令에 있어서의 一元化라는 基本原則에도 不拘하고 以後 施行過程上의 政治的, 社會的 與件으로⁽⁶⁾ 多元的이고複雜한 體系를 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좀더 具體的으로 보기로 한다.

(5) 이러한目標는 尚今 完全히 達成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今年에 있어서도 社會保障의 非受給者에 대한 조치는 이들에게 一般制度 또는 特別制度에의 任意의 加入權을 부여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 自治制度를 하나의 例로서 보면 同制度가 別途로 設置된 것은 이를 構成員들이 一般被用者와 同一金庫에 加入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基礎的인 紿與방에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데에 基因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政府가 보다 強力하게 一元化政策을 추진 했더라면 이들의 反對 또는 抵抗이 그렇게 重大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경우 政府는 제기된 문제를 正面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個別的金庫 설치라는迂迴的 方法을 採擇한 것이 그 實際이었던 것이다.

프랑스制度는 人的 對象面에서는 被用者(salariés)를 위한 制度와 被用者가 아닌 者(non-salariés)를 위한 制度로 區分할 수 있다.

被用者를 위한 制度중에서 가장 代表的인 것은 全體 社會保障受給者の 70%以上을 占하는 民間商工業部門 被用者를 對象으로 하는 一般制度(régime général)이다. 被用者를 위한 制度로서는 이외에 鐵山, 鐵道, 電氣ガス事業, 各種의 國營事業, 職業軍人등의 特殊職의 約 300萬의 被用者를 對象으로 하여 各己特別制度(régimes spéciaux)가 設置되어 있다. 이들 各 特別制度의 存在가 프랑스 社會保障體系를 복잡하게 하는 主要한 要因의 하나이다.

被用者가 아닌 者를 위한 制度로서는 商工業自營業者, 自由業者, 家內工業者 등 約 170萬을 對象으로 하는 一定의 制度가 있는 바, 이를 自治制度(régimes autonomes)라 한다. 이외에 農業制度(régime agricole)가 있다. 大部分의 경우 이 制度는 被用者가 아닌 者를 위한 制度에 包含시켜 理解할 수 있으나 農業의 固有性으로 法制上 또는 實際運營上, 他制度와는 區分되는 多數의 特殊性이 나타나고 있다. 同制度는 農業經營者, 自營農 및 農業被用者를 그 對象으로 하고 있다.

위의 4個制度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法定의 要件을 갖출者에 대하여는 強制的이다. 즉 이들은 一定制度의 金庫에 加入하고 一定의 保險料를 支拂하고 그에 대하여 一定의 紿付를 받는 것이다.

以上의 法定制度는 엄격한 意味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를 形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狹義의 社會保障制度는 基本的으로는 私的 發意에 의한 各種制度에 의하여 補完되고 있다.

이러한 補充制度(régime complémentaire)는 勞使間의 團體協約에 의하여 設置되는 것으로 이러한 團體協約이 主務長官의 認可를 받으면 그것은 一般的的, 強制的으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法定制度와 다름이 없는 것이 된다. 그例가 補充年金制度인 것이다. 또한 個個의 企業의 固有한 補充制度도 물론 存在하는 바, 그例로서는 「르노 自動車工場」의 協定制度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團體協約에 基한 補充制度 외에 廣義의 社會保障으로서는 公的 扶助(assistance publique) 制度가 있다. 이 制度는 所得이 一定基準에 未達하는 貧困者를 救濟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現在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에 있어서는 失業保險은 存在하지 아니하는 바, 失業者에 대해서는前述한 團體

協約 및 公的扶助에 의하여 一定한 紙與가 행하여지고 있을 뿐이다.

그으로 公的扶助에 관하여 한가지 더 附言할 것은 이 分野에 있어서의 支出은 社會保障制度가 本格的으로 實施되게 된 然後에도 계속 增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注目할 만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나. 保護範圍의 擴大의 觀點

1) 被用者

이점에 있어서는 가장 廣範한 法의 保護를 받는 것은 一般制度에 속하는 被用者이다. 즉 同制度는 이들에 대하여 勞動災害, 職業病, 疾病, 老齡, 死亡, 家族負擔에 대하여 紙與를 행하고 있다. 失業에 대하여는前述한 바이나 이에 관한 團體協約은 1958년 12월 31일 체결되어 主務長官의 認可를 받은 것임을 附記하여 둔다. 農業制度에 있어서는 1972年까지는 勞動災害와 職業病에 관해서는 使用者가 直接責任을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一般制度와 차이가 있었으나 同年에 勞動保險이 設置되었으므로 이러한 特色은 사라졌다 하겠다. 다만 同制度에 있어서는 農業의 生產性, 相對的인 低賃金 등으로 一般的으로 低水準의 紙與를 提供하고 있는 바, 그것은 年金給與에 있어서는 一般制度나 特別制度에 비하여 특히 현저하다.

特別制度에 있어서는 多樣한 範疇의 被用者에 대하여 혹은 企業體 자신이 혹은 特別金庫가 紙與를 支給하고 있다. 다만 一定의 危險에 대하여는 特別制度의 受給者는 一般制度에 所屬할 수도 있는 것으로,例컨대 公務員이 疾病保險에 관하여는 一般制度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特別制度에 있어서는 一般制度上의 各種給與 외에도 勞動管理의 彩色를 가지는 紙與가 附加되고 있으며 그 大部分에 있어 一般制度보다 높은 水準의 紙與가 實施되고 있는 것이다.

2) 自營業者 등

自營業者, 家內工業者 등은 모두 自治制度의 領域 안에서 老齡 및 疾病에 관한 保護를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自治制度는 歷史的으로 가장 늦게 시작된 것으로 그 保障機能도 一般制度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다.

家族給與에 있어서는 一般制度上의 (商工業自營業者, 家內工業者 및 自由業者) 혹은 農業制度에 있어서의 (農業經營者) 紙與를 받는다.

3) 職業活動을 하지 않는 者

이들은 家族手當制度가 實質的으로 거의 一般化되어 있는 결과로 一定한

家族給與(失業手當, 出產手當)를 받는 외에는 경우에 따라 公的 扶助에 의한 一定한 紙與를 받을 뿐이다.

以上에 檢討한 바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保護되는 者	對象인 危險	制 度
商工業被用者	勞動災害・職業病	一般制度 (大多數의 被用者) 老齡에 대하여는 補足年金制度에 의한 补充에 있다.
	疾病・出產・廢疾	약간의 被用者 및 약간의 위험에 관하여 特別制度가 있다.
	老齡・死亡	
	家族負擔	
農業勞動者	失業	社會扶助 協約에 기한 失業保險
	勞動災害・職業病	使用者의 直接補償制 (1972年까지)
	疾病・出產・廢疾	農業制度
	老齡・死亡	(農業福祉共濟金庫)
商工業自營業者 自由業者 職人	家族負擔	
	失業	社會扶助
	疾病・出產	自治制度
	老齡	自治制度(各카테고리別)
農業經營者	家族負擔	一般制度
	勞動災害	強制保險
	疾病・出產・廢疾	強制保險(被保險者の 選擇)
	老齡 家族負擔	農業制度 (農業福祉共濟金庫)
無業者	疾病・出產・廢疾	社會扶助 (貧困을 要件으로 하여)
	家族負擔	一般制度 (若干의 紙付만)

以上으로 프랑스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의 沿革 및 그概要를 살펴 보았거니와 다음에서는 同制度上 가장 中心的인 一般制度에 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이 問題에 관하여는 먼저 同制度上의 各種給付에 관하여 重點을 두고 檢討하고 다음에 同制度의 財政 및 運營機構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II. 一般制度上의 各種給與

既述한 바와 같이 一般制度는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에 있어 그 受給者的의

70%以上을 包含하는 中心的인 것으로서 同制度는 鐵道, 電氣, 鎳山 等의 特別制度에 속하지 아니하는 一般商工業의 被用者 및 學生, 作家들 그에 準하는 者에 대하여 狹義의 危險(risque) 및 家族負擔에 대하여 各種의 紙與를 提供하고 있다. 그런데 狹義의 危險은 業務外의 危險과 業務上危險으로 區分될 수 있는 바, 前者は 疾病, 老齡, 出產, 死亡, 廢疾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고 後者は 勞動災害 및 職業病을 指稱하는 것이다.

이러한 狹義의 危險에 關하여는 一般制度는 前記한 一般商工業의 被用者에 대해서만 適用되는데 反하여 家族負擔에 關하여는 上記 被用者 以外에 農業 以外의 自營業者에게도 適用된다.

一般制度의 考察에 있어서는 現行運營機構에 맞추어 이를 醫療保險, 老齡保險 및 家族手當으로 나누어 考察하는 方法도 있으나 前述한 危險의 性質에 따라 考察하는 것이 一般的의므로 本稿에서도 그에 따라 이를 社會保險, 勞動災害·職業病補償 및 家族紙與로 나누어 檢討하기로 한다.

1. 社會保險

一般制度의 一分野로서의 社會保障制度上의 紙與에 關한 考察에 있어서는 그 受給要件에 關한 몇가지 문제가 提起되는 것이므로 本稿에서도 우선 이에 關하여 檢討한 然後에 同制度上의 各種紙與에 關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가. 受給者의 範圍

1) 強制加入原則

社會保險은 그 受給者の 大部分에 대하여는 法的으로 加入이 強制되고 있는 바, 그리한 範疇에 속하는 者에 關하여는 現行 社會保險法典(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은 그 基本原則을 定하고 다음에 一定한 者에 대하여는 그에 準하는 者로서 그 適用範圍를 擴大하고 있다.

ㄱ. 基本原則

1930年代에 最初로 創設된 社會保險에 있어서는 그 受給자는 ① 使用者와 勞動契約을 締結하고 그 ② 賃金이 一定額 以下인 者에 限定되어 있었다. 즉 그것은 低所得 被用者에 대해서만 適用되는 것이었다.

이에 反하여 現行社會保障法典 제241조는 前記한 從來의 制限的 條件을 모두 廢棄하고 社會保險의 適用範圍를大幅 擴張하였는 바, 同條는 「年齡을 不問하고 또한 年金受給資格者이라도, 또한 報酬額 또는 種類, 契約의 形態

種類 또는 有效期間에 不拘하고 프랑스 國籍을 가지는 男女로서 就業上の 資格 또는 就業場所를 不問하고 또는 複數의 使用者에 雇用되고 있는 者는 모두 社會保險에 強制的으로 加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以上의 規定에 의하면 國籍 또는 居所上の 條件을 별도로 한다면 社會保險의 被保險者는 報酬를 받고 勞動하고 使用者の 監督 또는 管理를 받는 모든 者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契約의 種類 및 資格 如何, 賃金額 또는 形態를 不問하고 從屬勞動者는 社會保險의 被保險者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問題의 核心이 되고 있는 從屬勞動者와 獨立勞動者의 區別은 實際에 있어 매우 어려운 것으로 判例는 이에 대하여一般的으로 다음에 基準에 立脚하고 있다. 즉 特定人이 他人의 計算下에 一定한 勞務를 提供하는 경우, 그 勞務의 遂行에 있어 前者가 後者에 의한 어떠한 監督 또는 管理를 받게 되면 從屬關係는 存在하고 그 反對로 完全한 獨立性을 가지게 되면 從屬勞動者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以上에 檢討한 것이 社會保險 受給者로서 加入이 強制되는 者에 대한 原則的 規定 및 內容인 바, 社會保障法典 제242조 및 제613조는 다시 前記한 者에 準하는 것으로 社會保險의 受給者の 資格을 가지게 되는 一定한 경우를 列舉함으로써 그 範圍를 擴大하고 있다.

1. 法律에 의한 受給者の 擴大

① 社會保障法典 제242조

同條에 의하여 열거되고 있는 受給者로서 主要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家內勞動者

⑩ 勞動法 第1編 第29條 以下의 規定의 適用을 받는 外交員 및 商事代理人

⑩ 모든 種類의 保險會社의 仲介人, 檢查人 및 其他 免許를 要하지 아니하는 代理人

⑩ 協同組合의 被用者가 아닌 役員 및 多數支店을 가지는 會社의 登記管理者

⑩ ホ텔, 다방 및 食堂의 從業員

⑩ 映畫館의 案內人

⑩ 會社役員(資本의 過半을 가지지 아니하는 有限會社代表 株式會社社長)

⑩ 被用者 아님 文筆家

⑪ 專屬저널리스트 및 그에 準하는 者

⑫ 賽行演藝人 및 마네킨 걸

以上에 列舉된 者들은 社會保險上의 完全한 紙與를 提供받는다.

⑬ 社會保障法典 제613조는 文學, 戲曲, 音樂, 舞蹈, 視聽覺, 映畫등의 分野의 著作者는 社會保險의 受給者로서 規定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前記한 者와는 달리 勞動災害補償 및 疾病, 出產에 있어서의 現金給與는 支給받지 못한다.

2) 任意加入

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現行 社會保障法典 제2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者 또는 동 제242조에 特別히 列舉된 者에 대하여는 社會保險에의 加入이 強制되는 것이 原則이다.

이에 反하여例外的으로 다음의 要件에 해당하는 一定한 者에 대하여는 社會保險에의 任意加入에의 길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은 社會保險上의 一定의 紙與, 즉 废疾 및 老齡保險上의 保護를 받는다.

① 以前에 最少限 6個月間 強制保險 加入者로서 以後 그에 必要한 要件을 充足하지 못하게 된 者

② 第三者(tierce personne)로서 重廢疾者를 看護하는 配偶者 또는 家族

나. 1967년 8월 21일 大統領은 現在프랑스國內에 居住하면서 強制疾病保險에 加入하고 있지 아니한 者 全員에 대하여 疾病 및 出產에 대하여 現物給與를 받을 수 있는 方途를 마련하였다. 이리한 任意保險의 保險料는 公的 扶助制의 負擔으로 된다.

또한 1971년 7월 13일의 法律에 依據하여 強制疾病保險上의 紙與를 받고 있지 못하는 身體障礙者는 疾病・出產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그 費用은 當事者가 身體障碍手當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公的 扶助制度가 負擔한다.

나. 所要登錄期間 및 雇用期間

學生, 任意保險加入者등, 다만 社會保險上의 一部給與만의 受給者를 별도로 한다면, 社會保險 加入者는 原則적으로 同制度上의 모든 紙與를 받을 수 있다. 다만 同制度의 濫用을 防止하기 위한 目的에서 前記한 紙與의 受給에 있어서는 一定한 登錄期間⁽⁷⁾ 및 雇用期間이 一般的으로 要請되고 同期間은

(7) 登錄(immatriculation)이라 함은 社會保險受給者로서 認定되는 者를 社會保險

危險의 種類에 따라 相異하다.

1) 所要登錄期間

ㄱ. 醫療・出產保險上의 現物給與에 관하여는 登錄期間上의 制限은 없다⁽⁸⁾.

金錢給與에 관해서도 同一한 原則이 適用되는 것이나 勞動中斷期間이 6個月을 經過하는 경우에도 勞動을 中斷하게 된 달의 期日부터 起算하여 12個月間의 登錄期間이 必要하다.

- ㄴ. 前記한 12個月의 登錄期間의 要請은 廢疾保險에도 適用된다.
- ㄷ. 出產保險上의 金錢給與에 있어서는 出產豫定日로부터 起算하여 10個月의 登錄期間이 必要하다.

2) 所要雇用期間

ㄱ. 이리한 期間은 紙與에 따라 相異한 것이나 出產・醫療保險上의 現物給與에 있어서는 最初의 診療를 받기 전에 3個月間에 200時間 또는 直前 1個月間의 120時間을 被用者 또는 그에 準하는 者로서 勞動한 事實이 立證되어야 하는 것이다.

ㄴ. 1973년 12월 29일의 法律은 上記 二個給與에 관하여 年度制(principe d'annualisation)을 採擇하여 이를 紙與는 每年 4월 1일 以前의 1年間 1200時間 勞動한 事實을 立證하는 者에 대하여 同年 4월 1일부터 翌年 3월 30일 까지 시험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이리한 年間勤勞制度는 強制的인 것은 아닌 것으로 受給者는 勤勞時間에 관해서는 從來의 月制 또는 分期制와 뒤의 年度制의 어느 條件을 充足하여도 前記한 紙與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社會保險上의 各種給與

1) 疾病保險

疾病保險은 基本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事項을 그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疾病 또는 業務外의 災害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勞動할 수 없게 된 被

名簿에 記載하는 行政作用이다. 이리한 記載行為는 實際로는 加入者番號와 社會保障카드의 交付라는 形式으로 행하여 진다. 이에 대하여 加入(affiliation)은 行政行為는 아닌 것으로 그것은 法的 地位 즉 被保險者の 特定金庫에의 所屬을 指稱하는 것이다. 따라서 登錄은 制度에의 加入節次에 관한 것이고 加入은 그 結果로서의 特定金庫와의 關係에 관한 것이다.

- (8) 이리한 原則은 1975년 7월 4일의 法律에 의하여 醫療・出產保險에 관하여는 모든 制度에 共通의인 것으로 되었다.

保險者의 賃金損失을 一定限度까지 現金給與의 形式으로 補償하는 것.

- ② 被保險者 또는 그 近親者의 疾病으로 인한 醫療 또는 準醫療費(para-medical)의 支出에 被保險者가 對處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는 內容의 或은 이러한 支出費用의 償還의 形式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나 이를 現物給與라고 稱하고 있다.

ㄱ. 現物給與

疾病保險上の 現物給與는 一般醫, 外科醫師, 醫療補助者에 의한 費用 및 醫藥, 入院費 등을 負擔한다. 實際에 있어서는 被保險者가 우선 必要한 費用을 支出하고 난 후에 一定額이 償還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疾病保險上の 現物給付는 現金給與와는 달리 被保險者 자신뿐만 아니라 그 近親者의 醫療費, 醫藥費 등을 負擔하고 있다. 近親者は 一定한 要件下에 配偶者, 原則的으로 16歲 未滿의 子女 및 三等親 以內의 尊屬, 卑屬, 媳族 및 傍系親族을 包含하는 것이다.

(1) 入院外診療

① 基本原則

被保險者は 醫師, 醫療補助者, 藥師, 檢診室등을 자유로이 選擇할 수 있다. 既述한 바와 같이 疾病保險의 現物給與에 있어서는 實제로는 先支拂後 償還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被保險者は 診察을 받으면 醫師등으로부터 診察票를 받게 되는 바, 同票에는 醫師가 그가 행한 醫療行爲의 内용과⁽⁹⁾ 醫療酬價를 記載하여야 한다. 이러한 診察票는 경우에 따라서는 藥師의 관계 書類에 의하여 補完되기도 한다. 被保險者は 이를 書類를 그가 속하고 있는 初級疾病保險金庫에 提出함으로써 支出된 費用의 償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경우 原則的으로 關係費用의 一部는 被保險者가 負擔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一部負擔은 醫療費의 抑制를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그 負擔率은

(9) 醫療行爲는 記號로 表示되고 있다.

- 例 : C—一般醫에 의한 診察
Cs—專門醫에 의한 診察
V—一般醫의 往診
K—外科醫의 醫療行爲

- (10) 實際에 있어 多數의 경우에는 一部負擔額의 一部分은 各職場에 設置되어 있는 共濟組合이 이를 負擔하고 있으므로 被保險者の 負擔은 보다 輕減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關係法令은 共濟組合에 의한 一部負擔額의 支拂에 있어서 그 全部에 대하여 행하여 질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被保險者は 最少限의 費用은 스스로 負擔하여야 하는 것이다.

原則的으로 醫師, 外科醫, 醫療補助者에 관한 費用에 있어서는 25%이고 醫療費에 관하여는 그 種類에 따라 0%에서 65%로 되어 있다.

然이나 이러한 一部負擔은 醫療行爲 및 疾病의 性質 또는 被保險者の 特別한 狀態에 따라 完全히 免除되는 경우도 있는 바, 그러한 것으로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① 長期의 疾病으로 高額의 治療費를 要하는 것. 例컨대 癌이나 精神病 같은 것으로서 關係行政命令은 이에 속하는 것으로 25가지 病을 列舉하고 있다.

② 上記 命令에 列舉된 것이 아니라도 長期의이고 特別히 高額의 治療費를 要하는 것인 경우에는 金庫諮詢醫(médecin-conseil)의 意見에 基하여 一部負擔이 免除될 수 있다. 30日 以上的 入院을 要하는 疾病의 경우에도 또한 被保險者の 一部負擔은 免除된다.

③ 끝으로 被保險者の 身體의 또는 資產의 狀態가 一部負擔의 免除要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勞動能力 2/3의 減退로 疾病年金을 받는者, 勞動災害에 因한 年金受給者 또는 國民連帶基金의 受給者 등을 들 수 있다.

② 醫療費, 手術費등에 대한 原則의 適用 問題

醫藥費등의 償還에 있어 그 基礎가 되는 醫療酬價는 原則的으로 醫師團體와 社會保障金庫間에 合意된 協定料金으로 되어 있다.

協定料金의 決定方式에 있어서 1971년까지는 道單位에서 醫師들의 組合과 社會保障金庫에 체결되는 協約에 의하는 것이었으나 同年에 이르러 이러한 從來의 道協約이 7월 3일의 法律에 의하여 全國協約으로 되었다. 이러한 全國協約은 同年 10월에 社會保障의 全國醫療保險金庫와 二大全國醫師團體間에 체결되었고 現在 實施되고 있는 것은 1976년에 체결된 第二次協約이다. 그런데 基本에 있어서는 兩協約이 별로 다른 것이 없는 바 다음에 그 내용을 간단히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 協定料金 및 그 適用

協約은 原則的으로 自由診療를 행하는 모든 醫師에 대하여 拘束力を 가진다. 다만 一定期間內에 있어서는 協約適用을 排除할 수 있는 選擇權이 각 醫師에 부여되어 있다.

경우 協約醫에 대하여는 協定料金이 適用되고 非協約醫에 대하여는 行

政權에 의하여一方의으로決定되는職權料金이適用되는 바, 後者는前者에비하여料率이현저히낮은편이다.

各道에는醫師 및 醫療保險代表의 同數로構成되는 社會醫療委員會(commission médico-sociale)가設置되어있다. 同委員會는道에있어서의協約의實施上提起되는 모든問題의解決에當하는任務를지고있다.

道委員會가그任務를遂行할수없는경우에는역시醫師·醫療保險代表의同數로構成되는全國社會醫療委員會가그機能을代行한다.

道委員會는특히管轄區域內의醫師들이행한一名「프로필」이라고略稱되는診療,概況과관련하여主要한機能을遂行하는바, 그內容은대개 다음과같다. 各道의醫療保險金庫는醫師各人の處方에관련된社會保障金庫에대한財產上의責務를認識시키기위한目的으로그管轄區域內의各醫師에대하여그가實施한醫療行爲및回數와處方의性質및關聯費用이符號로表示되는統計表를作成한다. 이러한統計表는社會醫療委員會에提出되고同委員會는非正常的인數字가發見될때에는이를關係醫師에게通報한다. 만일, 次後에도이러한過誤가是正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同委員會는醫療保險金庫에이러한事實을報告하게되고同委員會는궁극적으로는關係醫를協約의適用對象에서排除할수있다.

이경우그에대해서는그料率이현저히낮은職權料金이適用되게되므로前記한協約適用排除조치는過激한醫療費支出의抑制手段으로서상당히實效的인것이라 할수있다

(ii) 料金의 超過

이문제는認可된경우와그리하지아니한경우를區分하여考察하여야한다.

① 認可되지않은料金超過

醫療開業者가協定料金을지키지않을경우에는社會醫療委員會는그料金超過가不當한것인때에는不當超過분을反還하도록當該醫師에게要請할수있다.

그럼에도不拘하고不當料金超過非行이반복되는경우에는社會醫療委員會는궁극적으로關係醫師에대하여協約適用에서의排除措置를取할수있다

② 認可되는料金超過

일정한경우에는開業醫에게料金超過權이인정되고있다. 먼저例外的

狀況에 있어서는 患者的 特別한 要請이 있는 경우에만 料金超過가 인정된다.

다음에 보다一般的인 것으로서 다음의 두가지範疇에 속하는 開業醫에는 常時料金超過權이 인정되고 있다.

그 첫째는 大學 또는 病院에서 特別한 資格을 獲得한 者이다.

그 둘째는 病院에서의 職責, 國際的인 科學誌에 論文掲載 또는 開業醫와 教授 또는 그에 準하는 職員의 併行으로 醫師로서의 知名度가 특히 高은 者이다. 社會醫療委員會는 이러한 開業醫의 名簿를 作成하여야 한다. 이와 關聯하여 同委員會는 常時料金超過權이 自動的으로 부여되는 資格證의 リ스트를 作成하여야 한다. 餘他의 경우에는 委員會는 個別의 申告를 받아 申請者가 常時料金超過資格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醫學的 權威가 있는가 如否를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2) 入院診療

被保險者는 公立病院 또는 私立病院中 어느 病院에나 자유로이 入院하여 治療를 받을 수 있다.

① 公立病院

醫療費는 患者가 받는 씨비스에 따라 相異하다. 醫療保險金庫는 法的으로 규정되어 있는 一般費에 대해서만 償還하고 있다. 따라서 高額의 特別한 씨비스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补充的 費用은 患者が 負擔하는 것이다.

前記한 一般費의 償還分에 대해서는 소위 第三者支拂原則(Principle de tiers payant)이라 하여 醴療保險金庫가 直接 病院에 支拂하고 入院患者인 被保險者는 患者負擔分만을 支拂하는 것이다.

② 私立病院

이에는 認可病院과 非認可病院이 있는 바, 認可는 地方認可委員會가 이를 행하고 同委員會의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에 대하여는 全國認可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醴療保險金庫는 非認可病院의 이의를 認定하지 아니하고 이들 病院에서支出된 費用은 償還되지 아니한다.

認可病院에 있어서는 그 入院費의 償還은 다음의 한가지 方法에 의한다.

原則的으로는 病院과 醴療保險金庫間의 協約에 의하여 決定되는 協定料金表에 의한다.

協定料金表가 없는 경우에는 金庫가一方的으로 定하는 責任料金表에 의하는 바, 이 料金表는 實際費用보다 낮게 策定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差額은 被保險者의 負擔으로 되는 것이다.

ㄴ. 現金給與

病院保險에 있어서의 現金給與는 傷病手當金의 形式으로 支給되는 바, 이 것은 勞動者가 疾病 또는 事故(業務外)로 一時的으로 就勞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다.

社會保險은 勞動停止日부터 起算하여 4日째부터 그 賃金의 代償으로서 一定額을 支給하고 있다. 勞動停止日부터 3日間은 待機期間이라고 呼稱되는 것으로 不必要한 缺勤事態를 防止하려는 데에 그 存在理由가 있는 것이다.

(1) 現金給與額

① 原則

現金給與額은 原則的으로 被保險者の 日當賃金額의 1/2이 된다.

被保險者が 3人 以上的 子女를 養育하는 경우에는 勞動停止後 31일부터는 賃金의 2/3가 된다.

傷病手當金策定의 對象으로 되는 賃金은 勞使雙方이 據出하는 保險料算定의 基礎로 되는 賃金이다.

또한 日當賃金額은 原則的으로 其月의 平均賃金日額이 된다.

② 最高額 및 最低額

① 最高額

傷病手當金의 策定賃金은 保險料算定賃金과 同一한 것임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後者에 관하여는 一定上限額이 있고 그 超過額은 原則的으로 保險料算定上 考慮되지 아니한다⁽¹¹⁾ 이러한 上限額은 現金給付의 算定에도 適用되는 것이다. 즉 日當賃金額의 1/2에相當하는 傷病手當金日額은 이 上限額의 1/60을 超過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最低額

6個月을 넘는 疾病에 관하여는 그 最低額은 障害年金의 最低額을 參酌하여 決定된다. 이 傷病手當金의 最低額은 障害年金 最低額의 1/365以上의 額

(11) 이 上限額은 賃金의 上昇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현재는 4,000프랑으로 되어 있다. 다만 疾病保險의 경우에는 部分的으로 上限額이 철폐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社會保障制上の 財源問題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이어야 하는 것이다.

⑩ 特別한 경우

傷病手當金은 入院診療時 및 勞動災害 또는 軍人恩給등에 의한 紙與와併給되는 경우에는 減額되는 것이 原則이다.

(2) 現金給與의 支給期間

傷病手當金은 原則的으로 勞動不能의 全期間에 걸쳐 支給된다. 然이나 이에는 一定한 制限이 있는 것이다.

① 癌, 結核, 精神病등 社會保障法典 제293조에 規定되어 있는 一定의 長期의 疾病의 경우에는 傷病手當金은 勞動停止日부터 起算하여 3年間 支給된다.

② 前記한 疾病 以外의 경우에는 被保險者는 一 또는 複數의 疾病에 관하여 3年間에 걸쳐 最高 360日分의 傷病手當金만을 支給받을 수 있다.

③前述한 바와 같이 傷病手當金은 原則的으로 最高 3年間에 걸쳐 支給될 수 있는 것이나 同期間중에 被保險者가 醫療保險金庫가 決定하는 一定期間에 걸쳐 勞動을 再開하는 경우에는 上記期間은 最小限 一年 더 延長될 수 있다.

(3) 溫泉療法에 의한 治療에 대해서는 그 濫用事態가 頻發한 점을勘案하여 行政部命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事者の 特別한 事情에 의하여 正當화되지 아니하는 限 傷病手當金은 支給되지 아니하는 것이 原則이다.

2) 出產保險

出產保險은 出產과 關聯하여 發生하는 疾病과 同一한 두 가지 문제, 즉 醫療費 및 出產休暇期間中の 賃金의 落失에 대하여 一定한 紙與를 支給하고 있다.

1. 受給者

① 賃金喪失에 對應하는 紙與로서의 現金給與는 女性被保險者만이 受給者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反하여 現物給與는 女性被保險者뿐 아니라 被保險者の 配偶者, 被保險者の 孫, 養女 및 私生兒도 이들이 醫療保險의 受給者の 資格을 갖추고 있을 때는 前記한 紙與의 受給者로 될 수 있다.

②受給要件으로서 登錄期間 및 雇傭期間에 관하여는 現物給與와 現金給與를 區分하여야 한다. 前者에 있어서는 疾病保險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原

則的으로 上記 兩期間上의 制限은 없다.

現金給與에 있어서는 女性被保險者は 妊娠日前 혹은 出產休暇日前부터 起算하여 3個月間に 200時間의 有給被用期間 및 出產豫定日前에 最少限 10個月間의 登錄期間을 充足시키는 경우에만 同給與를 支給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③ 妊產婦는 그 사실을 社會保障初給金庫에 申告하고 產前 또는 產後의 各種 檢診을 받아야 한다.

二. 出產手當金

手當金額은 勞動不能狀態의 女性被保險者の 賃金日額의 90%까지 支給되나, 여기에도 疾病保險과 마찬가지로 最高額이 있다.

女性被保險者は 最少限 6週間의 休息을 取하여야 하고 最高 產前 6週間, 產後 8週間의 總 14週間의 休息을 取할 수 있다. 이와한 全期間에 걸쳐 出產手當金이 支給되는 것이다.

三. 現物給與

出產保險은 그 受給者에 대하여 妊娠 및 出產에 관한 醫療費 準醫療費, 醫藥費 入院費 및 補助機具의 費用一切를 負擔하여 疾病保險과는 달리 一部負擔하는 存在하지 아니한다.

妊娠 또는 出產이 病的 結果를 誘發하는 경우에는 疾病保險의 管轄로 된다. 被保險者は 以上의 紙付外에도 附隨的 紙與로서 保育手當 또는 牛乳券이 支給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出產保險은 아니나 家族紙與로서 產前手當, 出產手當등을 支給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障碍保險

障礙保險은 疾病保險의 延長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勞動能力의 減退에 基因하는 賃金喪失의 補償으로서 被保險者에게 年金의 形態로 紙與가 提供되고 있다.

四. 受給者

① 廢疾의 定義

廢疾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定義될 수 있는 바, 특히 身體的 條件 또는 從前의 職業的 狀況에 따라 定義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社會保障法은 이兩者를 混合하여 廢疾은 3年을 超過하는 勞動不能狀態로서 從前의 勞動能力 또는 所得能力의 2/3以上이 減退된 경우를 指稱한다고 定義하고 있다.

이 경우 2/3의 勞動不能은 最終的이고 持續的 性格의 것이어야 한다. 被保險者 的 障碍狀態가 固定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紿與는 障碍年金이 아니라 疾病給與로서 行하여 진다.

勞動災害 및 職業病에 因한 永久疾病은 障碍保險과는 다른 法的規制를 받는다. 또한 戰爭으로 因한 瘦疾은 軍人年金制度의 適用을 받는 것이다.

② 支給要件

① 登錄 및 雇用期間

被保險者は 瘦疾이 隨伴되는 勞動不能時부터 또는 身體器關의 早期衰退로 인한 障碍事實의 確認時부터 起算하여 그 以前에 쳐어도 12個月間에 걸쳐 社會保障金庫에 登錄되어 있어야 한다.

被保險者は 同12個月間에 800時間以上의 勞動時間을 가져야 하고 그중 初期의 3個月間의 것이어야 하든가 또는 同時間에는 自身의 意思에 反하여 失業狀態에 있었던 것이어야 한다.

② 年 齡

受給者の 年齡은 60才 以下이어야 한다. 그것은 이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自動的으로 老齡保險의 適用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前者の 경우에 있어서는 年金은 一般老齡保險과는 달리 60才부터 保險料算定基礎額의 50%를 支給 받는다.

二. 紿 與

瘦疾者는 障碍年金 및 疾病保險上의 現物給與를 받을 수 있다. 疾病者는 또한 機能再訓練 및 職業教育에 관한 授惠的 措置의 適用을 받을 수 있다. 瘦疾者의 遺族인 配偶者는 遺族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① 瘦疾者의 權利

(1) 瘦疾年金

① 計算方法

勞動能力 또는 所得能力이 2/3以上 減退된 瘦疾狀態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一定의 報酬를 받고 勞動에 從事할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 從前賃金의 30% 가 年金으로 支給된다.

이 경우 算定基礎인 賃金은 瘦疾前 10年間의 被保險者期間中의 平均賃金이나 保險料上限의 適用을 받고 또한 同賃金額은 때때로 再評價된다.

이러한 基準에 따른 1977년의 最高年金額은 12,996프랑이 된다.

어떠한 職業活動도 할 수 없는 疾病者는 賃金의 50%에相當하는 年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1977年의 最高年金額은 21,660프랑이 있다.

이들 疾病者가 日常生活에 있어 他人의 도움을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年金額은 다시 40% 加算된다. 그러나 이 規定은 正確한 것은 못되는 것으로, 그것은 行政命令에 이보다 높은 最少限의 加算額이 規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느 경우에도 障碍年金은 老齡被用者手當을 下廻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⑪ 年金의 改正

障礙年金額은 廢疾者의 狀態의 惡化 또는 好轉에 따라 引上 또는 引下될 수 있다.

年金은 다음의 경우에는 一時停止 또는 廢止될 수 있다.

一. 年金受給者の 所得能力이 疾病 또는 事故發生前의 50%를 上廻하게 되는 경우

一. 年金受給者が 報酬를 받고 發動하는 경우 그 收入과 年金의 合算額이 受給者の 以前의 所得額을 超過하는 경우

⑫ 疾病保險上의 現物給與

廢疾者는 本人 및 近親者에 있어서 모든 社會保險의 被保險者와 마찬가지로 疾病保險上의 現物給與를 支給받는다.

이 경우 本人에 대한 費用에 있어서는 一部 負擔이 免除된다.

⑬ 生存配偶者の 權利

障碍年金의 受給者が 死亡한 경우 그 生存配偶者は 그 自身도 廢疾者이나 스스로의 權利에 의하여는 社會保險上의 給與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一定의 制限條件下에서 原則的으로 配偶者에 支給되고 있던 年金의 半額에相當하는 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4) 老齡保險

老齡保險에는 두가지 相異한 老齡給與가 있는 점에 특히 留意하여야 한다 먼저 據出給與가 있는 바, 그것은 一定의 保險料의 納付를 前提로 하여 支給되는 것이다. 이러한 據出給與로서는 被保險者 자신에 대한 年金 또는 手當金, 生存配偶者에 대한 年金 및 唯一金手當, 受給者에 대한 主婦의 老齡年金이 있다.

다음에 無據出給與가 있는 바, 이것은 受給者の 貧困한 資產狀態를勘査

하여 支給되는 扶養手當의 性格을 가진다.

同給與는 保險納付와는 無關하게 支給되는 것으로서 현재 그것이 老齡保險의 테두리내에서 支給되고 있기는 하나 本質으로는 公的 扶助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老齡保險上의 紿與는 同一한 觀念에 基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兩者間에는 一定의 聯關係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먼저 據出給與는 無據出手當金의 額을 參酌하여 決定되고 同額을 下廻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에 據出給與 또는 無據出給與의 受給者の所得額이 一定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一定의 補充手當金이 이에 加算되는 것이다.

ㄱ. 據出給與

① 被保險者の 權利

(1) 年 金

① 完全年金

年金의 支給에는 一定의 保險期間 및 年齡上의 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完全年金의 支給은 첫째 被保險者が 150分期 (37.5年)의 保險期間 또는 그에 準하는 期間을 充足하는 경우에 支給되며 그 以上的 期間은 年金額의 算定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음에 被保險者は 原則적으로 60歲에 退職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年金額은 10年間의 最高賃金의 年平均價의 25%에相當하는 것이 된다.

被保險者が 退職申請을 延期하는 경우에는 1년에 5%씩 加算된다. 다만 이 경우의 年金算定基礎額은 保險料算定額이 그 基礎가 되는 것으로 例컨대 65歲에 退職하는 者의 法定制度上의 最高年金額은 24,000프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年金額은 大部分의 경우 實生活費에도 未達하는 것으로 이를 补充하여 주는 것이 原則적으로 各職場單位로 運營되고 있는 补充年金制度인 것이다.

⑪ 比率年金

被保險者期間이 37.5年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從來 이를 다음의 세가지 경우로 區分하고 있었다. 즉 被保險者期間이 15年以上 37.5年 未滿인 경우는 그 期間에 比例한 比率年金이, 5年以上 15年 未滿의 경우에는 5年 年金이, 5年 未滿의 경우에는 當事者の 拂込保險料額에相當하는 一時金이 支給되었다.

그런데 1975년 1월 3일의 法律은 前記한 5年 年金이나 一時金制를 모두

廢止하고 被保險者期間이 37.5년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모두 同期間에 比例하는 金年을 支給하도록 하였다. 이를 公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P: 年金額

$$P = \frac{S \times 0.5 \times T}{150} \quad S: 10年分의 上限附平均賃金額 \\ T: 四半期數$$

(2) 特惠者

社會保障關係 法律은 一定한 要件을 갖춘 者에 대하여는 60歲부터 65歲에 받을 수 있는 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에 該當하는 者로서 勞動不能으로 認定된 者, 在鄉軍人, 프랑스人으로 戰時中 포로로 되었던 者, 레지스탕스 관계로 強制送還 또는 抑留되었던 者, 苦痛스러운 業務에 從事하는 肉體勞動者등이 列舉되고 있다.

(3) 最高額 및 最低額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年金은 保險科算定基礎로 된 賃金 즉 上限附賃金에 대하여 計算되는 것이므로 一定한 最高額을 超過할 수 없는 것이다.

他面에 年金은 老齡被用者(AVTS)額을 下廻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 年金受給者は 老齡이 65歲이고 最少限 15年間의 被保險期間이 있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인 年金額이 行政命令에 規定된 一定額 以下로 되는 경우에는 同年金額의 15倍에 相當하는 一時金을 支給받는다.

(4) 加算制度

年金은 다음의 경우에는 一定額이 加算된다.

① 3人의 子女를 가지고 있는 者

② 配偶者를 扶養하는 者

③ 자신이 被保險者로서 子女가 16歲에 達하기 以前에 9年間 養育한 母親

④ 日常生活에 있어 第3者의 도움을 必要로 하는 者

以上의 諸年金은 一時金을 除外하고는 每年 3回에 걸쳐 再評價된다.

(5) 附隨的 權利

年金受給者は 疾病保險上의 現物給與를 받을 수 있다.

同受給者は 경우에 따라서는 國民連帶基金上의 補充手當을 支給받을 수 있다. 年金受給者は 또한 例컨대 鐵道旅行時, 有給休暇時에 適用되는 有利한

料率을 適用받을 수 있고 一定의 租稅의 免除를 받을 수 있다.

② 生存配偶者の 權利

① 老齡年金 또는 老齡手當을 受給하고 있던 被保險者가 死亡한 경우 그 生存配偶者は 다음 중 한가지 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生存配偶者が 廢疾者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寡婦 또는 夫年金을 受給하게 된다.

廢疾者가 아닌 경우에는 一定한 條件下에 移轉年金(Pension de reversion) 을 受給하는 바, 그 條件으로서는 受給者の 年齡이 55歲 以上이어야 하는 것과 最少限 2年 以上的 結婚期間의 두가지가 열거되고 있다.

어느 경우에나 配偶者は 死亡한 被保險者の 被扶養者이어야 하는 것으로 그 個個人的 所得은 被保險者の 死亡時에 있어 行政命令에 規定된 一定額以上 을 超過하여서는 안된다.

前記한 두가지 年金에 있어서 그 年金額은 原則적으로 死亡한 者의 年金額의 1/2이 되는 것이나 老齡被用者手當을 參考하여 그 最低額이 決定되는 것이다.

⑩ 被保險者が 60歲에 到達하기 전에 死亡한 경우에 있어서도 生存配偶者は 一定한 條件下에 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⑪ 生存配偶者の 年金은 3人 以上的 子女를 가지고 있거나 養育한 경우에는 그 額의 10%가 加算된다.

﹂. 無據出給付

無據出給付는 保險料拂入의 有無와는 無關하게 支給되는 것으로 老齡者の 最低生活을 保障하기 위한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無據出年金은 老齡被用者手當, 主婦年金, 終身恩給, 國民連帶基金上의 补充手當 등의 形態로 支給된다.

이러한 無據出年金을 受給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가지 要件을 充足하여야 한다.

① 年齡: 原則적으로 65歲이어야 하나 勞動不能者의 경우에는 60歲부터 支給된다.

② 住居: 受給者は 프랑스 本土에 居住하여야 한다.

③ 國際協定上의 反對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는 上記給付는 프랑스人에게만 支給된다.

⑯ 所得：受給者の所得額은 一定의 上限額을 超過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1977. 6. 현재 獨身者에 대한 上限額은 10,900프랑이었다.

無據出給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形態가 있으나 그 내용적으로는 基本手當과 國民連帶基金上の 补充手當의 두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1) 基金手當

① 老齡被用者手當

受給자는 年齡, 國籍, 所得등의 前述한 一般條件 以外에도 50歳 以後 15年間의 被用者期間 또는 全職業活動期間中 25年間의 被用者期間의 特別한 條件을 充足하여야 한다.

受給者は 行政命令으로 定하여지는 一定額을 支給받는 바, 그 額은 1977. 7. 1. 以後로는 4,750 프랑으로 되어 있다. 同額에 대하여는 3人の 子女를 가지고 있거나 養育한 者에 대하여는 210%가 加算되고 있다.

② 母親手當

老齡被用者手當과 同類의 手當이 다음의 一定한 條件下에 被用者の 配偶者, 寡婦 또는 離婚女로서 家庭에 머무르고 있는 女子에게 支給된다.

③ 受給者は 5人 以上的 子女를 이들이 16歳에 到達하기 전에 9年 以上 養育한 者이어야 한다.

④ 受給者は 老齡年金, 移轉年金, 老齡手當등 어떠한 紿與의 受給者이어서는 아니된다.

⑤ 그 男便이 被用者로서 勤務하였고 社會保障 또는 그에 準하는 制度上의 年金, 老齡手當 其他 手當金의 受給者이어야 한다.

⑥ 終身恩給

이 恩給은 老齡被用者手當의 受給者の 寡婦로서 65歳 以上인 者에게 支給된다. 또한 死亡한 受給者が 年齡條件 以外의 모든 條件을 充足한 경우에도 生存配偶者에 대하여 同恩給이 支給되는 것이다.

以上の 두가지 경우에 있어서 受給者は 移轉年金의 受給者이어서는 아니된다.

(2) 國民連帶基金上の 补充手當

國民連帶基金² 1956년 6월 30일의 法律에 의하여 既存의 年金制度上의 給付만으로는 充分한 資源을 가지지 못하는 者들에 대하여 补充手當을 支給하기 위한 目的으로 設置된 것이다.

이러한 補充手當은 據出給付 또는 無據出給與의 受給者로서 그 受給額이一定額 以下인 者에게 支給된다.

이 補充手當額은 行政命令으로 定하여지는 것으로 1977.7.1. 현재 5,250 프랑으로 되어 있다.

國民連帶基金의 資源은 1956年의 法律에는 租稅로서 充當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58년 12월 30일의 大統領令은 一般制度가 支給하는 老齡給與에 附隨的으로 支給되는 補充手當은 一般制度 자체의 負擔으로 하였다. 따라서 一般制度에 관한 한 同制度의 本來의 意義는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以上 다시 同負擔의 一部는 國家가 지는 것으로 하였다.

5) 死亡保險

이 保險에서는 死亡保險者에 대하여 少額의 一時金이 支給되고 있다.

ㄱ. 受給者

① 優先權을 가지는 者

死亡一時金의 支給은 死亡時 被保險者가 全般的이고 正常의으로 扶養하고 있던 者에 優先的으로 行하여 진다.

이러한 被扶養者가 있는 경우에는 死亡 一時金의 支給은 다음의 順位에 따라 行하여 진다.

① 生存配偶者

② 嫡出子, 養子, 被扶養孤兒

③ 尊 屬

被扶養子가 過數인 경우에는 死亡一時金은 均分된다. 그것은 尊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內編關係의 경우에는 그 生存配偶者가 被扶養者이었던 경우에는 一時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②前述한 優先受給權을 主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順位에 따라 一時金이 支給된다.

① 生存配偶者

② 卑 屬

③ 尊 屬

ㄴ. 一時金의 額

一時金의 支給額은 死亡被保險者の 賃金日額의 90倍에相當하는 金額이다.

다만 同額은 保險料算定基礎가 되는 賃金年額의 1%를 下廻할 수 없고 또한 同額의 1/4을 超過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勞動災害·職業病補償

앞에서 본 바와 같이一般的인 疾病 또는 事故에 대해서는 基本的으로는 疾病·出產保險에 의한 保護를 받으며 이는 또한 殘疾保險에 의하여 补完되고 있다. 그런데 勞動災害 및 職業病에 대하여는 本稿의 序頭部分에서 잠간 言及한 바와 같이 特別한 法的 規制를 받으며 또한 被保險者에 대한 紙與도 보다 多樣하고 實效的인 것이다.

다음에 그 內容에 관하여 具體的으로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가. 被保護者

極少數의例外를 除外하고는 勞動災害·職業病이라는 職業的 危險으로부터 自動的인 保護를 받는 者는 社會保險上의 受益者로 되는 者와 同一하다.

이에 관하여 社會保障法典 제415조는 그 原因의 如何를 막론하고, 勞動事實에 基因하여 또는 勞動에 當하여 그 資格 또는 場所 如何를 막론하고 1人 또는 2人 以上的 使用者 또는 企業主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勞動者 또는 被用者에게 發生한 勞動災害로 본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同規定은 또한 社會保險의 受給者와 거의 同一한 擴大適用 對象者の 리스트를 列舉하고 있다.

다만 一定의 範疇에 속하는 者는 社會保險에 加入할 경우에도 勞動災害補償制度에 의한 諸給與를 支給받고 있다. 社會保障法典 제416조는 그러한 者로서 技能訓練施設의 受講者, 職業再教育過程의 受講者 등을 열거하고 있다.

以上의 者는 勞動災害 또는 職業病의 被害者로 되는 경우에는 补償請求權을 取得하며 特定의 登錄期間 또는 雇用期間은 一切 要求되지 아니한다.

나. 勞動災害 및 職業病의 定義

1) 勞動災害의 定義

勞動災害는 法令上 이를 狹義의 勞動災害와 通勤途上の 災害로 區分하고 있다. 兩者에 共히 被害者는 同一한 补償을 받는 것이나 使用者的 保險料納付額이 다르다는 점에서 兩者를 區分할 實益이 있는 것이다.

ㄱ. 狹義의 災害

狹義의 勞動災害는 社會保障法典의 關係規定에 의하면 勞動事實에 基因하거나 勞動에 當하여 發生한 災害를 말한다. 이러한 勞動災害의 概念은 두가

지 要素를 包含하는 바 그것은 우선 災害라는 것과 다음에 災害와 勞動間に 一定한 關聯性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第一의 要素는 勞動災害와 職業病과의 區別을 可能하게 하고 第 2의 要素는 疾病保險에 의한 補償이 支給되는 業務外의 災害와 勞動災害와의 區分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러한 두가지 要素에 관하여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災害의 概念

災害의 概念에 대하여 従來 判例 및 學說은 原因事案의 外在性, 激烈性 및 突發性的 세가지 要素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最近의 大部分의 判例에 있어서는 앞의 두가지 要素를 排除하고 다만 原因事實의 突發性만을 그 定義基準으로 採擇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基準에 의하면 職業病은 「그 進展이 완만한 一連의 事故의 結果」이고 災害는 「그 原因 및 時期가 확실한」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② 災害와 勞動과의 聯關係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社會保障法典 제415조에 의하면 勞動災害는 「勞動의 事實에 起因하거나 勞動에 當하여 發生하는 것」이어야 한다.

(i) 勞動의 事實에 起因한 災害

이 경우의 因果關係는 直接的이며 따라서 별다른 困難한 문제는 없다고 볼 것이다. 例컨대 勞動者의 勤務中에 發生하는 爆發, 墜落 事故등이 그 典型적인 例가 될 것이다.

(ii) 勞動에 當하여 發生한 事故

이 경우의 因果關係는 前者에 비하여 완만한 것으로 그에 따라 여러가지 오묘한 문제が 提起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判例가 採擇하고 있는一般的 基準은 「勞動者가 事故發生時 使用者的 權限下에 있었는가의 如否」이다. 다음에 이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檢討하기로 한다.

③ 企業內의 勞動

이경우 判例가 採擇한 具體的 基準은 時間과 場所의 基準이다. 즉 勤勞時間 및 場所에서 發生한 모든 災害는 勞動災害로 推定되는 것으로 그것은 判例에 따르면 이 경우에 있어서 勞動者는 使用者的 權限下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時間・場所의 兩基準은 判例에 의하여 強力的으로 適用되고 있다.

먼저 時間上의 基準에 있어서는 休憩時間中 發生한 災害 또는 出勤時間 조
금전에 혹은 退勤時間 稍금후에 發生한 災害도 勞動災害로 되는 것이다.

다음에 場所에 관한 것으로는 例컨대 通常의 勤務時間中에 있어서는 被害者가 許可를 받고 短時間 職場에서 離脫한 때에 發生한 災害는 勞動災害가 되는 것이다.

勞動者가 그 命令에 不服하여 使用者の 指揮權限이 미치는 범위에서 完全히 離脫한 때에 發生한 災害는 勞動災害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순한 不服從事實만으로는 勞動災害의 性質을 排除할 정도로 充分한 事由가 되지는 아니한다.

④ 企業外의 活動

이 문제는 주로 外交員, 販賣擔當者 또는 出張勤務時 發生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관하여 判例는 被害者가 實質的으로 職業活動을 遂行하고 있는 때에 發生한 災害는 勞動災害로 보나 이러한 職業活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있어서는 被害者는 使用者の 指揮下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 發生한 災害에 대해서는 勞動災害時 性格을 否認하고 있다.

۳. 通勤途上の 災害

通勤途上の 災害는 民法上의 災害와는 區別되어야 하는 것으로 前者에 있어서는 狹義의 災害에 관한 것과 同一한 給與를 받는다. 이에 反하여 民法上의 災害의 경우에는 前者에 비해 상당히 不利한 疾病保險上의 給付만을 받는 것이다.

① 定義

通勤途上の 災害는 時間・場所의 두가지 要素에 의하여 定義된다.

① 場所

勞動의 場所와 다음에 열거되는 場所間의 往復 途上에 發生하는 災害는 通勤途上の 災害라 본다.

② 勞動者의 종된 居所

③ 勞動者가 家族의in 理由로 通常 다니는 一定의 場所

④ 勞動者의 通常의 食事場所

原則적으로 勞動災害補償에 의하여 保護되는 上述한 의미의 通勤距離는 最短의 것이어야 한다. 然이나 「日常生活의 本質의 必要性」에 의하여 正常

化되는 一定의迂迴는 通勤의 概念에 包含되는 것이다.

⑪ 時 間

被用者는 日常生活에 있어 出退勤 또는 上述한 場所를 穩복해야 함은 物론이다.

그런데 例컨대 出勤時에 있어 그 過程上 一定의 中斷狀態가 介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中斷이 必要한 것이고 (例컨대 上述한 의미의 生活上의 必要性 또한 그것이 可能한限 最短時間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以前, 以後의 通勤途上에 發生한 事故는 勞災保險上의 通勤途上의 災害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通勤中斷時에 發生한 災害는 通勤途上의 災害로는 되지 아니한다.

⑫ 補充的 考察

通勤은 勞動의 遂行과 結付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勤務地에의 出勤 또는 그에서의 退勤途上인 경우에도 그것이 勞動의 遂行과 直接的으로 結付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過程上 發生한 災害는 通勤途上의 災害는 아닌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서 勞動組合의 集會 또는 罷業者集會에 參加하기 為한 目的上 勤務地로 向하거나 그에서 歸家하는 도중에 發生한 災害를 例로 들 수 있다.

以上의 諸要件의 充足 如否에 대한 立證責任은 原則的으로 被害者에게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社會保障金庫가 스스로 調査하여 特定의 事故가 通勤途上의 災害로 推定할 수도 있다.

2) 職業病의 定義

① 프랑스 社會保障法典은 勞動에 의하여 發生하는 一定의 疾病을 勞動災害와 同類로 取扱하고 있는 바, 이를 職業病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職業病은 行政命令에 의하여 制限的인 리스트가 作成되어 있어 그에 登載되지 아니한 疾病은 職業病으로 取扱되지 아니한다.

현재 前記 리스트에 記載되어 있는 職業病의 數는 64個인 바, 이들은 그 内容上 다음의 세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① 急性 또는 慢性의 中毒症狀에 의하여 特징치워지는 疾病, 例컨대 鉛의 處理過程上 發生하기 쉬운 鉛中毒

② 細菌性疾患, 例컨대 破傷風

③ 勞動環境 또는 勞動者에 要求되는 姿勢로부터 發生하는 疾病

② 被用者는一方 자신이 리스트에掲載된 疾病에 걸린 事實과 他方 그러한 疾病을 誘發하기 쉬운 것으로 思慮되는 勞動에 從事하고 있음을 立證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사실이 立證되면 充分한 것으로 勞動과 職業病의 因果關係는 法的으로 設定되는 것이다.

다. 補償節次

勞動災害의 경우 被害者は 그 使用者에 대하여 24時間 以内에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使用者는一方 被害者에 대하여 醫師에게 提出한 被害證明書를 交付하고, 他方 48시간 以内에 初級疾病保險金庫에 災害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保險金庫는 監督官廳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被害者は 自由로이 醫師를 選擇하며 醫師는 處分한 醫療行爲를 被害證明書에 記入한다. 마찬가지로 被害者は 藥局 및 入院施設을 자유로이 選擇 利用할 수 있다.

醫師는 傷害 및豫想되는 結果에 관한 證明書를 使用者와 社會保障金庫에 送付한다. 이 경우 金庫는 그의 顧問醫에게 被害者の 檢診을 要請할 수 있다.

金庫는 災害의 申告 또는 醫師의 證明書를 送付받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24시간 以内에 被害의 原因, 狀態, 被害者 및 그 被扶養者の 確認등에 관하여 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1) 狹義의 労動災害에 있어서는 그것의 被害者が 死亡했거나 또는 死亡 또는 永久疾病을 誘發한 性質의 것인 경우

(2) 通勤途上의 災害에 있어서는 그것이 적어도 10日 以上的 労動不能狀態를 誘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

金庫는 災害의 職業的 性格을 否定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災害事實을 안 날로부터 15日 以内에 使用者 및 被害者에 그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

D. 補 償

勞動災害・職業病에 있어 被保險者は 一定의 現物 및 現金補償을 받는 바, 이들은 그 내용상 短期的 补償과 長期的 补償으로 區分할 수 있다. 受給者는 以外에도 勞災保險에 特有한 것으로 一種의 現物給與의 성질을 가지는 身體機能再適應, 職業再教育등을 받을 權利가 있으나 이는 비교적 부수적 인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생략하기로 한다.

1) 短期的 补償

短期的 補償은 現物給與와 被害者の 症狀이 固定될 때까지 支給되는 休業手當을 包含한다.

1. 現物給與

被害者は 醫療, 準醫療, 醫藥等의 各種給與를 支給받는 바, 이 경우 被害者는 既述한 바와 같이 醫師, 藥局 또는 入院施設을 자유로이 選擇할 수 있다.

診療費 및 醫療費는 初級疾病保險金庫로부터 直接 支拂되는 바, 이를 第三者支拂制度라고 한다. 또한 被害者에 대하여는 이들 費用에 있어 一部負擔制가 適用되지 아니한다. 즉 被害者에 대하여는 이들 費用은 完全히 無料인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入院費의 경우도 原則적으로 同一한 것이다, 다만 初級疾病保險金庫는 앞의 疾病保險에서 考察한 바 있는 通常料金단을 카바한다는 점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2. 休業補償手當

被害者は 災害發生日에 대하여 從前의 賃金을 受領한다. 그리고 그翌日부터는 被害者は 從前賃金의 1/2에 해당하는 手當을 受給할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補償은 業務外의 災害의 被害者에 대하여 支給되는 것에 비하여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훨씬 유리한 것이다.

- ① 手當支拂期間에는 症狀이 계속되는 限 制限이 없다.
- ② 手當은 災害發生後 28日부터 賃金의 2/3로 된다. 이는 또한 被扶養者인 子女의 有無에 의하여 左右되지 아니한다.
- ③ 手當의 算定에 있어서는 當事者の 賃金이 基礎로 되는 것이다, 그額은 保險料算定의 基礎로 되는 上限附賃金日額이 아니고 上限年額의 1/100을 最高限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社會保險制度에 비하여 保險料의 算定基礎와 給與의 算定基礎間의 관계가 훨씬 완화되고 補償의 性格이 보다 부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休業補償手當의 算定基礎로 되는 賃金日額의 決定에 있어서는 被害者の 賃金日額이 30日이 아니고 實際 勤務日數에 의하여 나뉘어진다. 이것이 被害者에게 보다 有利한 것임은 물론이다.

2) 長期的 補償 — 年金

丁. 被害者에 支給되는 年金

(a) 年金額

이것은 勞動災害 또는 職業病으로 被害者の 勞動能力이 決定的으로 減退된 경우 또는 그 症狀의 固定으로 그것이 推定되는 경우에 이를 補償하기 위하여 支給되는 것이다.

年金額은 被害者の 廢疾의 程度 및 從前의 賃金額의 두가지 要素를 기초로 하여 決定한다.

① 廢疾의 程度

社會保障法典 제453조에 의하면 廢疾의 程度는 그 性格, 被害者の 一般的狀態, 年齡, 精神的・肉體的 機能, 職業適性 및 專門資格에 의거하여 廢疾階級指表를 参照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이러한 基礎위에서 算出되는 廢疾率은 다시 修正을 보게 된다. 즉 그 率이 50%까지인 것은 그 1/2로 되고 50%를 넘는 것은 그 超過分의 1/2이 加算된다.

② 廢疾者の 從前賃金

年金額의 決定에 있어 廢疾者の 從前賃金은 行政命令으로 規定된 最高額 및 最低額을 감안하여 조정된다.

廢疾率이 적어도 10% 以上인 때에 있어서 被害者の 從前賃金이 行政命令上의 最低額(S로 表示)에 未達하는 경우는 後者로 代置된다.

2S額까지의 被害者の 年間賃金은 全額 고려된다. 그것이 2S를 넘는 部分으로 8S額까지는 그 額의 1/3이 고려된다. 年金賃金이 8S를 초과하는 部分은 年金의 算定基礎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③ 上述한 의미의 被害者の 從前賃金에 廐疾率을 곱하면 年金額이 產生된다. 다만 被害者が 第三者의 補助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年金額의 40%가 加算된다.

(b) 年金의 轉換 또는 改定

① 年金은 廐疾率이 10% 未滿이고 그 額이 一定額 以下인 경우에는 一時金으로 支給되어야 한다. 社會保障法典은 또한 任意의 一時金에의 轉換規定도 두고 있다.

② 年金額은 症狀이 惡化한 경우 被害者の 要請에 따라 改定될 수 있다. 症狀의 改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初級疾病保障金庫는 當

該人에 대하여 定期的 檢查를 實施하여야 한다.

1. 遺族에 支給되는 年金

勞動災害 또는 職業病으로 被害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다음의 一定의 近親者가 年金의 受給權을 가진다.

① 配偶者— 그 年金은 原則的으로 被害者 賃金年額의 30%로서 年齡 및 瘦疾의 정도에 따라 50%까지 引上될 수 있다.

② 被扶養者인 子女 其他の 卑屬으로 16歳 未滿인 者一年金은 原則的으로 被害者의 賃金年額의 15%이며 2人인 경우에는 30%가 되고 다음에 每1人에 대하여는 10%가 加算된다.

③ 尊屬 遺族은 配偶者 또는 子女가 없는 경우에는 補助費를 받을 수 있었음을 立證하면 充分하다. 그 反對의 경우에는 尊屬은 被害者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었음을 立證하여야 한다. 그 年金額은 原則的으로 被害者의 賃金年額의 10%이다. 2人 以上的 尊屬이 있는 경우에는 最高 30%까지 될 수 있다.

3) 不許容過失・故意的 過失의 경우의 補償

勞動災害・職業病의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公・私法上의 一般的인 損害賠償制度의 適用이 排除되는 것으로 위에서 考察한 補償의 諸側面은 이러한 特別한 原則의 適用을 받는 것이다. 然이나 不許容過失(faute inexcusable)이나 故意的 過失(faute intentionnelle)의 경우에는 補償의 內容 또는 範圍는大幅의 修正을 받게 된다. 또한 不許容過失과 故意的 過失은 그 法的 制度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다음에 兩者를 區分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1. 故意的 過失의 경우

故意의 過失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故意에 該當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一般法上의 損害賠償制度가 適用된다. 다음에 具體的인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被害者の 故意의 過失

勞動災害가 被害者 자신의 故意의 過失에 基因한 것인 경우에는 被害者は 労動災害補償에 관한 限 어찌한 紿與도 支給받지 못한다.

② 使用者 또는 그 代理人의 故意의 過失

이 경우에는 民事上의 損害賠償責任制度가 原則的으로 適用된다. 다만 이 경우도 그것이 勞動災害라는 점을 감안하여 民法上의 一般制度에 다음의 一

定의 修正이 加하여지고 있다.

먼저 被害者는 勞動災害에 대한 補償을 社會保障金庫에 대하여서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社會保障金庫는 賠償責任者인 使用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다음에 被害者는 前記한 社會保障金庫에 의한 補償이 不充分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使用者에 대하여 補充的 補償을 請求할 수 있는 것이다.

ㄴ. 不許容過失의 경우

① 概念

不許容過失은 1898년의 勞動災害에 관한立法에서 採擇된 것으로 民法上의 過失의 一般形態는 아니다. 그런데 同過失의 概念에 관하여는 關係法은 어떠한 定義도 하지 아니했던 바, 1941.7.16.의 破毀院의 한 判決이 이러한 過失를 다음의 다섯가지 要素에 의하여 定義하였다. 즉 同判決은 먼저 積極的要素로서 ① 異常的 重大性 ② 危險의 認識 ③ 作爲 또는 不作爲의 任意性을 그리고 消極的 要素로서 ④ 災害誘發意圖의 不在 ⑤ 正當한 理由의 不在라는 要素에 의하여 不許容過失을 特징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不許容過失로서는 被用者가 그 作業에 따르는 重大한 危險을 警告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不可缺한 安全措置를 대안한 企業主의 過失이 그 典型的인 것이라 할 것이다.

② 不許容過失의 補償에 대한 影響

不許容過失이 補償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 災害發生에 決定的인 要因이 된 경우에 限한다.

① 使用者 또는 指揮에 當하는 者에 의한 不許容過失

① 이 경우 被害者에 支給되는 年金 또는 그 死亡時에 近親者에 支拂되는 年金은 增額된다. 다만 그 最高額은 損失賃金額을 超過할 수는 없는 것이다. 增額된 年金額은 初級金庫가 支給하나 그 增額分은 使用者에 對한 加保險料에 의하여 回收한다.

② 被害者는 또한 使用者에 대하여 精神的 苦痛, 美觀上의 損失, 生活의 不便上의 損失 및 職業上의 昇進可能性의 全部 또는 一部過失에 基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安全한 勞動力의 減退를 誘發하는 災害의 發生時에는 被害者에 대하여 法上의 最低賃金年額에相當하는 金額이 附加的으로 支給된다.

前述한 몇가지 경우 그 補償金은 우선 社會保障金庫에 의하여 支給되며 同金庫는 一定한 節次에 따라 使用者에게서 同金額을 回收하는 것이다.

3. 家族給與

社會保障制度의 一般制度에 있어 앞에서 檢討한 諸給與는 原則的으로 被用者와 그에 準하는 者에 대해서만 支給되는 것이었다. 이에 反하여 家族給與는 前記한 者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農業 以外의 自營業者에 대해서도 一般制度에 의하여 그 紿與가 行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家族給與制度는 또한 어떠한 職業活動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서도 一定한 限度의 紿與를 支給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特殊性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5. 7. 4의 法律은 家族給與의 支給에 있어서 職業活動의 要件을 완전히 廢止하고 同法律은 1978年부터 實施될 것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筆者가 아는 한에서는 同法律이 今年에도 全面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에 있어 家族給與의 部門은 基本的으로는 世界第一次大戰 後半以來 減少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人口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하나의 人口政策의 주된 手段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家族政策 내지는 人口政策은 租稅制度에 의한 家族負擔의 配慮라든가 2人 以上的 子女를 가지고 있는 家族에 대한 交通運賃의 割引制度 등의 刑法에 의하여서도 實시되고 있으나 家族給與制度가 가장 代表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家族給與制度는 현재 가장 發達한 部門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에 있어 人口政策에 基礎를 두고 있는 家族給與가 어느정도 重要한 것인가는 이러한 紿與가 嚴格한 意味의 家族給與制度에 의해서만 支給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考察한 社會保險 또는 勞動災害 補償에 있어서도 종종 家族給與의 性격의 諸給與가 行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 兩者的 區分은 그 性格에 基因하는 論理的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발적 性격의 制度的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이러한 家族給與에 관하여 먼저 一般的인 考察을 한 然後에 個個의 紿與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家族給與에 관한 一般的 考察

家族給與는 프랑스 社會保障制度上 가장 多樣性을 띠고 있는 것으로 個個

의 紙與의 支給에 관한 共通的 要件은 存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一般的 考察도 相對的인 것으로 여기서는 적어도 一定數 以上의 紙與에 共通的 要件이 되는 몇가지 觀念에 관한 檢討에 限定하기로 한다.

1) 被扶養子

ㄱ. 定義

被扶養子의 定義는 出產手當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扶養子女의 受胎狀態 또는 出產된 子女를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反하여 扶養의in 家族給與 또는 住宅手當 등에 있어서는 扶養子女의 定義는 상당히 난삽한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먼저 社會保障法典 제511조는 家族給與의 受給權者를 「1子 또는 그 以上의 子女를 家長 其他의 資格으로 扶養하는 者」로 規定하고 있고 同 제525조는 「그 資格 如何를 不問하고 實效의이고 常時의으로 부양하는 者」로 規定하고 있다. 以上의 兩規定에 의하면 家族給與制度上의 子女의 扶養者는 一子 以上에 대한 全般的인 扶養責任을 지는 者를 指稱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子가 摘出, 非摘出 또는 養子인가를 不問하는 것이다.

ㄴ. 年齡上의 制限

被扶養子에 대한 家族給與는 原則的으로 法定義務教育 年限인 16才까지만 支給되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多數의例外가 인정되고 있다. 다음에 이중 몇가지만 列舉하기로 한다.

① 義務教育을 마친 후에도 그所得이 家族給與의 算定基準額을 넘는 것이 아닌 때에는 家族手當의 支給은 半年間 延長된다.

② 當事者が 求職申請을 한 경우에는 就職時까지 最高 一年間 同手當의 支給이 延長된다.

③ 學業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就業不能의 疾病者에게 대해서는 家族手當은 20歲까지 支給된다.

ㄷ. 居所

原則的으로 被扶養者는 프랑스領土에 居住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두가지 重要한例外가 認定되고 있다.

① 暫定的(3個月 以下)인 海外滯留 또는 留學 또는 病의 治療를 위한 海外滯留時에는 家族手當이 계속 支給된다.

② 以外에도 歐洲經濟共同體의 規則에 의거한 多數의例外가 認定되고

있다.

2) 受給權者와 受給者

1. 受給權者

受給權者は 家族給與에의 權利의 名義人을 말한다.

家族給與에의 受給權者は 우선 一子 以上에 대한 扶養責任을 지고 있는 者이어야 한다. 受給權者は 原則的으로 프랑스 本土에 居住하고 있어야 한다. 受給權者は 또한 原則的으로 一定한 職業活動을 하고 있는 者이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 條件은 1975. 7. 4. 的 法律에 의하여 廢止되었고 同法律은 1978. 1. 1. 부터 施行될 것으로豫定되어 있었다. 다만, 既述한 바와 같이 同法律은 아직 全面的인 施行을 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受給者

受給者는 家族給與에의 權利를 行使하는 者, 即 同給與를 實際 受給하는 者이다.

一般的으로는 權利名義人이 그 權利를 行使하여 그 受給者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一定한 경우에는 兩者가 分離될 수도 있다⁽¹²⁾.

3) 家族給與의 算定基礎

(1) 家族給與額은 受給者の 經濟的 또는 職業的 狀況에 따라 決定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이나 이러한 方法은 처음부터 排除되었다. 1942年에 採擇된 基本原則은 塞느道의 金屬工業勞動者の 賃金을 使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以後 이 方法도 財政的 難關에 봉착하여 放棄되고 1949年 以後는 行政命令에 의하여 基準賃金이 決定되게 되었다. 그 引上은 賃金의 引上에 附應하는 것이 아니라 物價의 上昇에 따라 決定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數値을 基準으로 算定된 家族給與는 購買力은 維持되었으나 賃金의 上昇에 附應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子女가 없는 家族에 비하여 生活水準上의 相對的

(12) 受給權者와 受給者가 分離되는 경우로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法令上 열거되고 있다.

- (i) 父權의 全面的 또는 部分的喪失의 경우, 이 경우에는 關係兒童을 扶養하기로 된 者가 受給者로 된다.
- (ii) 父權의 喪失과는 無關하게 父親에 대한 給與의 支給이 子의 利益을 박탈할 危險이 있는 경우
- (iii) 無資格의 原因과는 無關하게 私人 또는 公的 機關에 子가 委託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私人이나 公的 機關이 家給與의 受給者가 된다.
- (iv) 家族給與의 後見의 경우

低下의 현상이 慮起되었던 것이다.

(2) 基準賃金에는 大部分의 家族給與의 算定을 위한 것과 單一賃金算定에 관한 두가지 種類가 存在하였는 바, 後者は 1962年 以後 전혀 引上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支給額은 相對的으로 減少되게 되었다.

(3) 補充家族手當에 관한 1977. 7. 12.의 法律은 從來의 算定方式을大幅修正하였다. 然이나 그 表現의 모호성으로 그 내부에는 모호한 점이 적지 아니하다. 어쨌거나 同法律은 基準賃金이라는 用語 대신에 月別算定賃金이라는 用語로 使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첫째 月別算定賃金은 子女의 家族에 대한 負擔을 全部 또는一部 補償하도록 決定되어야 한다.

② 둘째 同賃金은 物價의 上昇 및 家族의 經濟發展으로 인한 生活水準의 向上에의 參加라는 點을勘案하여 決定되어야 한다.

③ 끝으로 同賃金은 平均賃金 또는 最低賃金의 一般趨勢에 따라 引上될 수 있다.

從來 基準賃金은 年 一回 引上되었으나 前記 1977年的 法律은 月別算定賃金이 年 1, 2回 내지 數回에 걸쳐 引上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나. 各給與에 관한 檢討

家族給與制度에서 支給되는 諸給與는 種類도 많고 또한 그 性格도 매우 多樣한 편이나 이들은 그 性質上 大體로 다음의 세가지 範疇로 區分할 수 있다.

① 出產에 관한 純粹

② 扶養의 家族給與

③ 特定用途의 家族給與

이중에서 第一者는 出產에 관련하여 支給되는 것이므로 이를 出產手當이라는 題下에서 그리고 第二者는 가장 家族給與의 性格이 강한 것이므로 이를 家族手當, 第三者は 편의상 其他給與라는 題下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1) 出產手當

이에는 產前手當, 狹義의 出產手當 및 出產休暇의 세가지 純粹가 있다. 妊產婦는 家族給與로서의 出產手當 외에도 醫療保險上의 一定의 現物·現金給與를 受給할 수 있음은 이미 既述한 바 있다.

家族給與로서의 위의 세가지 紙與는 프랑스의 出產獎勵的인 人口政策과直接的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手當은 職業活動 또는 所得額上의 어떠한 制限도 없이 支給되는 것이다. 다만 產前手當의 紙與에 있어서는 妊娠申告를 하여야 하고 妊娠婦는 一定의 診療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들 두가지 紙與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① 產前手當

妊娠婦가 一定期間內에 同事實의 申告를 하면 以後 產前 9個月間에 걸쳐 產前手當을 受給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妊娠婦는 4回의 醫療檢診을 받아야 하며 이는 申告時 妊娠婦에게 交付되는 妊娠手帖에 記載된다.

妊娠婦는 初期 3回의 醫療檢診時 產前手當을 支給받는다.

手當額은 月別算定基礎額의 22%에相當하는 金額이다.

② 出產手當

出產手當은 그 支給條件이 產前手當보다 嚴格한 것으로 滿2歲까지의 프랑스 本土에 居住하는 幼兒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產母가 外國人인 경우에는 合法的인 居住權이 있음을 立證할 수 있어야 한다. 同手當의 受給에 있어서는 幼兒 및 產母의 健康에 관한 豫防的 檢診에 관한 諸規定을 遵守하여야 한다.

前記한 檢診은 出產後 8일째, 9개월 및 24개월째의 3回에 걸쳐 實施되며 이에 대하여는 健康證이 交付된다.

出產手當의 總額은 月別策定基礎額의 260%에相當하는 金額이다.

同手當額은 出產後 8일째의 檢診時에 그 50%가 支給되며 그 25%는 9개월째의 檢診時 支給되는 것이다.

이러한 出產手當은 產母 또는 幼兒의 扶養者에게 支給되는 것이다.

2) 家族手當

家族手當은 原則적으로 그 受給者가 一定한 職業活動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支給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多數의例外가 認定되고 있었다. 그런데 1975.7.4.의 法律은 이러한 職業的 條件을 廢止하고 同法律은 今年부터 實施될 것으로 豫定되어 있었다. 그러나 同法律은 아직도 關係行政命令의 未備로 全面的 施行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既述한 바이다.

다음에 이範疇에 속하는 各給與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狹義의 家族手當

① 이手當은 最少限 2名 以上的 扶養子女를 가지고 있는 家族에 대해서만 支給되는 것이다. 그手當額은 子女의 數에 따라 다음의 率에 따라 增額된다.

① 2子一月別算定基準額의 22%

② 3子一同基準額의 59%

③ 4子一同基準額의 96%

④ 4子 以上인 경우에는 1子에 대하여 同基準額의 33%

② 家族手當額은 또한 子女의 教育 및 扶養에 所要되는 費用에 대한 實質的 补償을 그目的으로 하여 扶養子女의 年齡에 따라 다음의 率에 따라 引上된다.

① 10歲 以下 一月別算定基準額의 10%에相當하는 金額

② 15歲 以上一同基準額의 16%

③ 끝으로 被用者는 從前의 所得稅 減免措置에 代替된 것으로서의 一定額의 补充手當을 支給받는다. 同手當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人 以上的 子女를 扶養하는 家族에만 支給되는 것이다.

2. 唯一賃金手當 또는 主婦手當

① 上記 兩手當은 共히 基本的으로는 家庭에서 子女를 돌보는 主婦를 支援하기 위한 目的으로 支給되는 것이다. 그支給에는 所得上 一定한 上限額이 있는 바, 그것은 子女의 數에 따라 相異하다. 極貧者の 경우는 手當額이 引上된다.

② 唯一賃金手當은 原則적으로 單一의 職業上의 所得源만을 가지고 있는 家族에 대하여 支給되는 것이다. 然이나 附隨的인 所得이 있는 경우에도 그所得額이 月別算定基準額의 1/2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것인 때에는 同手當은 여전히 支給된다.

그手當額은 앞의 家族手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扶養子女의 數에 比例하여 增額된다. 同手當額은 또한 定期的인 引上措置의 適用을 받는다.

③ 主婦手當의 受給에 있어서는前述한 唯一賃金手當의 受給上 要請되는 諸條件 外에도 다음의 몇 가지 條件을 더 充足하여야 한다. 우선 受給權者는 原則적으로 2人以上의 扶養子女를 거느리고 있어야 한다. 다만 扶養子가 2歲

以下인 경우에는 1人인 경우에도 主婦手當을 支給받을 수 있다. 다음에 被扶養子는 健康, 教育등에 基한 몇가지例外的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프랑스本土에 居住하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主婦는 職業活動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配偶者가 勞動不能狀態에 있는 경우로서 主婦의 職業生活이 家庭에서의 兒童教育과 附合되는 性質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補充家族手當

이 手當은 앞에서 檢討한 唯一賃金手當 또는 主婦手當의 實際支給額이 매우 낮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兩手當에 代置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 7. 12.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것이다. 同法律은 1978. 1. 1. 부터 實施될 것으로豫定되어 있었으나 關係行政命令의 未備로 아직도 施行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관계로 이 手當의 내용에 관한 檢討를 생략하기로 한다.

ㄹ. 孤兒手當

① 이 手當은 1970. 12. 23.의 法律로 設置된 것으로 兩親中 一者가 死亡한 경우에 支給되는 것이다. 同手當은 또한 兩親의 死亡 또는 이들에 의한 親子의 遺棄時 이들 子女를 扶養하는 者에 대해서도 支給된다. 끝으로 同手當은 그 親族關係는 被扶養者와 兩親의 一者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경우 또는 兩親中 一者가 그 子女를 明白히 放棄한 경우에도 支給되는 것이다.

② 同手當은 所得額과 無關하게 生存兩親 또는 實事上의 扶養子에게 支給된다. 그 手當額은 一部孤兒에 대해서는 月別算定基準額의 15%, 完全孤兒에 대해서는 同額의 30%이다.

ㅁ. 就學手當

이 手當은 1974年에 設置된 것으로 就學適齡兒童의 就學時에 單一回에 걸쳐 支給되는 것이다. 이 手當의 受給에는 受給權者的 所得額上 一定한 上限額의 制限이 있다.

이러한 就學手當의 受給額은 月別算定基準額의 20%에相當하는 額이다.

ㅂ. 託兒手當

① 이 手當은 1972年에 設置된 것으로 3歲以下의 兒童을 養育하고 있으면서 그 兩親이 共히 就學하고 있는 경우 또는 就業中인 獨身父母에게 支給되는 것이다.

② 이 手當의 支給에 있어서는 關係家族 또는 獨身者의 所得上 一定한 上

限額의 制限이 있는 바, 同上限額은 原則의 으로 唯一賃金手當의 引上該當額 또는 時間當最低賃金額인 2,130프랑에相當하는 金額이다. 이러한 上限額은 兩親이 共히 就業하고 있는 경우는 100% 增額되며 또한 扶養兒童 每 1人에 대하여 50%씩 增額된다.

③ 託兒手當은 一定한 경우에는 唯一手當과 重複的으로 支給될 수 있다.

④ 同手當의 受給에 있어서는 被扶養兒童은 주로 健康上의 理由로 인한例外의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受給權者の 家庭에 居住하여야 한다. 同兒童은 또한 兒童의 受託者는 公認家庭 또는 公共託兒所, 幼稚園, 保母로 公認된者이어야 한다.

⑤ 託兒手當은 每日 實際支出費用에 依據하여 支給된다. 다만 이에는 唯一賃金手當의 引上額에相當하는 上限額의 制限이 있다. 이 上限額은 母親이 最少限 月間 120時間 以上을 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比例的으로 減額되는 것이다.

3) 其他手當

前述한 바와 같이 이 範疇에 속하는 手當은 本質的으로 特別한 用途에 供할 目的으로 支給되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障碍者手當과 廣義의 住宅手當에 속하는 一定의 手當이 있다.

1. 障碍者手當

이 手當은 그 特性에도 不拘하고 障碍者를 가지고 있는 家族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起起되는 特別한 費用을 補償해 주기 위한 目的에서 支給된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考察한 一定의 家族手當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論者에 따라서는 本手當을 家族手當에 包含시키는 者도 있고 혹은 本手當과 託兒手當을 特別手當의 範疇에 넣어 考察하는 者도 있다.

이 範疇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몇가지 手當이 있다.

(1) 未成年障礙者特別教育手當

① 이 手當은 그 障碍兒童이 特別한 教育 또는 職業教育을 받아야 하는 家庭을 支援해 주기 위한 目的으로 設置된 것이다. 이 경우 그러한 教育에當하는 機關은 公的으로 認可된 機關이어야만 한다.

② 이 手當은 廉疾의 정도가 80%를 超過하는 모든 兒童에 대하여 就學年齡부터 20歲까지 支給된다.

③ 이 手當은 道特別教育委員會의 附合的 意見(avis conforme)에 依據하-

여 家族給與金庫에 의하여 支給되는 것이다.

그 手當額은 月別算定基準額의 50%에相當하는 金額이다.

(2) 未成年障礙者手當

이 手當은 1971年에 設置된 것으로 未成年障礙者特別教育手當이나 無料入院治療의 惠澤을 받지 못하는 未成年障碍者에게 支給되는 것이다. 同手當은 社會扶助手當과 重復的으로 支給될 수 있다. 그 手當額은 月別算定基準額의 15%에相當하는 金額이다.

(3) 成人障碍者手當

① 이 手當은 앞의 手當과 마찬가지로 1971年에 設置된 것으로 前手當의 受給年齡은 超過했으나 아직 65歲에 未達한 者에게 支給되는 것이다.

이 手當은 嚴格한 의미에서는 家族手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그 財源의 調達 및 管理가 家族給與金庫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는 점에서 그에 準하는 取扱을 받고 있는 것이다.

② 이 受當의 受給에 있어서는 障碍者는 프랑스國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废疾의 정도가 80% 以上이어야 하며 同手當과 同額의 废疾年金 또는 老齡年金을請求할 수 없는 者이어야 한다. 또한 受給權者の所得이 老齡被用者手當에 관하여 부과되는所得上限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手當額은 行政命令에 의하여 決定되는 바, 1977.7.1. 현재 月別最高額은 833.50프랑이 있다.

ㄴ. 住宅手當

廣義의 住宅手當에는 엄격한 의미의 住宅手當外에도 移轉手當, 住宅改良貸與등이 있다. 그런데 後者에 속하는 手當은 一時的으로 支給되는 것으로 별다른 重要性이 없는 것이므로 이들에 관해서는 간단히 기술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1) 住宅手當

① 이 手當은 基本的으로 다음의 二大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 同手當은 扶養子女로 인한 追加的인 住宅費를 補償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同手當은 이들 家族이 보다 快適한 住居環境을 마련하기 위한 目的에서 그所得의相當部分을 賯蓄하도록 助長하여 주기 위한 目的을 가지는 것이다.

- ② 이 手當은 다음의 다섯가지 範疇에 속하는 者에게 支給된다.
- ⑦ 위에서 考察한 家族給與中 어느 一給與의 受給者
- ⑮ 單一人的 扶養子女를 거느리고 있는 家族으로서 어떠한 家族給與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⑯ 結婚後 5年間 子女가 없는 家長 다만 夫婦의 어느 者도 結婚時 年齡이 40歲를 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⑰ 65歲 以上의(勞動不能時는 60歲) 尊屬을 扶養하고 있는 者.
- ⑱ 尊屬, 卑屬 또는 三等親 以內의 旁系親族을 扶養하고 있는 者 또는 家族. 다만 이들은 受給權者와 同一居所에서 居住하고 있어야 한다.
- ⑲ 住宅手當의 受給에는 上述한 人的 要件 外에도 住居 자체에 관한 다음의 몇가지 要件을 充足시켜야 한다.
- ⑳ 住居는 受給權者의 主된 居所이어야 한다.
- ㉑ 住居는 通風, 水道, 暖房施設 등 一定한 保健施設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㉒ 住居는 또한 居住者와 對比하여 居住에 필요한 最小限의 面積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㉓ 家賃(또는 貸付額의 償還金)은 그에 充當되는 것이 合理的으로 사료되는 世帶收入 規模 및 그 家族數에 對應하여 行政命令으로 決定되는 最底家賃額을 超過하는 것이어야 한다.
- ㉔ 實제 支給되는 住宅手當額은 實際 支拂된 家賃額과 最底家賃額에 相當하는 額이다.

(2) 移轉手當, 住宅改良貸付金 및 定着貸付金

移轉手當은 名稱 그대로 家屋의 移轉時에 그 費用을 補償하기 위한 目的으로 支給되는 것이다.

住宅改良貸付金을 住宅改良와 관연하여 低利로 貸與하는 것으로 그 償還期間은 30個月로 되어 있다.

定着貸付金은 그 所得額이 一定額 以下인 新婚家庭의 定着을 支援하기 위하여 無利子로 貸與되는 것이다.

III. 社會保障의 運營機構 및 財源

앞에서 우리는 프랑스 社會保障의 一般制度上의 諸給與에 관하여 살펴보았거니와 이제 끝으로 이러한 社會保障制度의 運營機構 및 財源問題의 관하여 概括的으로 檢討함으로써 本稿를 전부 마치고자 한다. 이러한 機構 및 財源 問題의 檢討도 原則的으로는 一般制度에 局限하기로 하나 다만 必要한 限度內에서는 其他制度에 관하여도 간단히 言及하기로 한다.

1. 社會保障의 運營機構 (一般制度의 運營機構)

이미 既述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는 一元化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그중 가장 代表的인 一般制度 以外에도 特別制度, 自治制度 및 農業制度가 並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의 多元化는 紙與面에서 뿐만아니라 그 運營機構面에서도 역시 그러한 것으로 各制度는 그에 特有한 運營機構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本稿에서는 一般制度의 運營機構에 대해서만 概括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一般制度의 運營機構에 있어서는 1967年の改革을 前後하여 그 基本的 樣相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와 관련하여 運營機構의 組織面을 먼저 考察하고 다음에 그 實際運營面에 관하여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가. 1967年의 改革 以前의 動營機構

1) 社會保障組織은 다음의 諸機構들로 形成되는 피라미드組織을 갖추고 있었다.

① 全國社會保障金庫

組織의 頂點에 位置해 있었으나 그 基本的 機能은 資金管理에 있었다.

② 地方 및 初級社會保障金庫

이들은 社會保險 및 勞動災害保險에 대한 各種給與를 支給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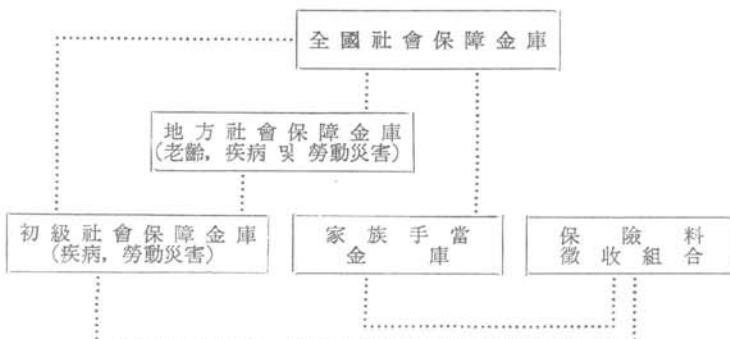
③ 家族手當金庫

家族給與를 支給하고 있었다.

④ 保險料徵收組合

이 機構의 機能은 물론 保險料의 徵收에 있었으며 初級金庫 및 家族手當金庫의 共通的 機關이었다. 以上에 記述한 바를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2) 全國金庫는 公法人이었으나 餘他의 모든 金庫는 私法上의 機關으로서



(點線表示는 非階層的 關係를 表示하는 것이다)

選舉에 의하여 選出되는 者들로 構成되는 理事會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었다. 이에 反하여 全國金庫의 理事會는 行政權의 代表 및 各金庫의 代表로 構成되어 있었다.

3) 地方社會保障金庫 및 初級社會保障金庫의 理事會에 있어서는 被用者の 代表가 理事會 總構成員數의 $\frac{3}{4}$ 을, 使用者の 代表가 $\frac{1}{4}$ 을 占하고 있었다.

이에 比하여 家族手當金庫의 理事會의 構成은 被用者代表가 $\frac{1}{2}$, 使用者代表 $\frac{1}{4}$, 自營業者代表 $\frac{1}{4}$ 로 되어 있었다.

나. 1967년의 改革以前의 運營機構

以上과 같은 從來의 一般制度上의 運營機構에 있어서는 各給與別 또는 一定範疇의 級與別로 財政的 均衡措置가 講究되어 있지 못한 것이었으며 또한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 被用者が 使用者에 대하여 단연 優越的 地位에 처하여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67.8.21.의 大統領令은 從來의 運營機構에 대한 根本의 修正을 加하였는 바, 同令에 의한 改革에 있어서는 ① 保護되는 危險의 分離原則 ② 勞使同數의 原則 ③ 組合組織에 의한 理事會 構成員의 指名原則의 三大原則이 그 基本理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1967年の 改革以後에 있어서의 現行 運營機構의 組織 및 運營方式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組織

1. 1967년의 改革의 基本理念의 하나의 保護危險의 分離原則에 따라 一般制度上의 諸給與는 그 內容上 네가지 範疇의 級與別로 區分되고 이들의 運營機構로서는 從來의 單一의 全國社會保障金庫에 代替하여 3個의 全國金庫

가 設置되었다. 또한 이리한 全國金庫의 下層組織으로서 一連의 初級 및 地方金庫가 設置되었다. 다음에 이에 관하여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疾病保險全國金庫

同金庫는 中央에 1個가 設置되어 있으며 그 밑에 16個의 疾病保險地方金庫와 122個의 疾病保險初給金庫가 設置되어 있다.

이들 金庫는 疾病, 出產, 癥疾 및 勞動災害・職業病에 관한 諸給與의 支給을 그 基本機能으로 하고 있다.

② 老齡保險全國金庫

中央에 1個 設置되어 있으며 그 밑에 1個의 地方金庫가 스트라스부르그에 設置되어 있다.

이들 金庫는 老齡保險에 관한 諸給與를 支給한다.

③ 家族給與全國金庫

中央에 1個 設置되어 있으며 疾病保險金庫와는 달리 地方金庫는 없으며 一定의 初給金庫가 道單位로 設置되어 있다.

이들 金庫는 家族給與의 支給을 그 主要機能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二. 一般制度上 資金의 管理는 中央社會保障資金部에 맡겨져 있으며 그 밑에 一定한 保險料徵收組合이 設置되어 있다.

三. 以上에서 檢討한 一般制度上의 諸運營機構中 3個의 全國金庫 및 中央社會保障資金部는 公法人이나 餘他의 金庫 또는 保險料徵收組合은 私的 機關이다. 然이나 이들은 公務(Service public)로서의 社會保障의 管理運營을 그 任務로 하고 있음으로 그 限度에서 一定의 行政權의 指揮・監督를 받는 것이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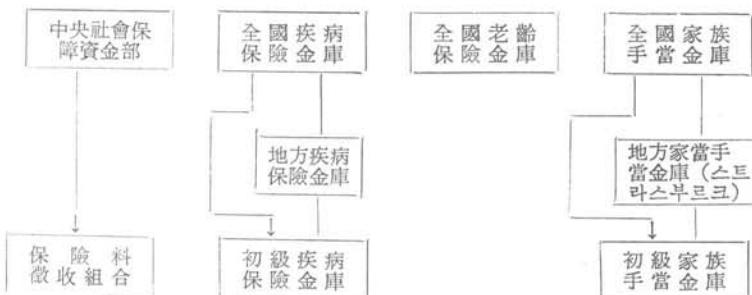
(4) 以上에 記述한 바를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p. 94)

2) 運營

위에서 檢討한 諸金庫는 議決機關으로서의 理事會 및 執行機關으로서의 金庫의 事務總長에 의하여 運營된다.

다음에 이들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3) 현재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에 있어 그 運營機構에 대한 一般的的 監督官廳은 保健・家族部이며 이 밖에 財務部가 同制度의 財源 및 豊算問題와 관련하여 一定한 監督權을 行使하고 있다.



(直線화살표는 階層의 關係를 表示하는 것이다)

1. 理事會

(1) 構 成

① 疾病保險金庫 및 全國老齡保險金庫

② 이들 金庫의 理事會는 勞使同數의 原則에 基하여 被用者代表 9名 및 使用者代表 9名의 理事로 構成된다. 前者는 가장 代表的인 勞動組合에 의하여 指名된다.⁽¹⁴⁾. 使用者代表는 프랑스經營者 團體聯合(CNPF)에 의하여 指名된다.

③ 이들 金庫의 理事會에는 金庫內部에 設置되어 있는 醫療, 藥劑, 齒科委員會의 長, 家族協議會의 代表, 全國共濟聯合의 代表가 參席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④ 疾病, 老齡, 家族保險의 3個의 全國金庫에는 社會保障의 主務官廳 및 財務部를 代表하는 政府委員이 參席하여 必要時에는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⑤ 家族手當金庫

家族手當金庫의 權限은 商工業分野의 被用者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農業以外의 自營業者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金庫의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도 被用者以外의 職業의 代表도 包含하도록 되어 있다.

同理事會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⑥ 被用者代表 9名

(14) 현재 理事會의 被用者代表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勞動者總聯盟 (CGT) 3名

勞動者總聯盟—勞動者의 협 (CGT—FO) 2名

民主勞動者聯合 (CFDT) 2名

基督教勞動者聯合 1名

幹部職員總聯盟 1名

- ⑤ 使用者代表 6名
- ⑥ 自營業者代表 3名

(2) 權 限

理事會는 原則的으로 金庫에 관한 諸問題를 審議하고 議決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 그 具體的 內容에 있어서는 金庫에 따라 相異할 것이다. 基本的인 것은 대개 다음과 같다.

- ① 組織機構의 整備
 - ② 金庫의 定款 및 內部規則의 制定
 - ③ 理事會의 理事長, 副理事長, 事務局長 및 各種委員會의 選出
 - ④ 管理部職員 即 事務總長, 事務次長, 部長 및 會計擔當官의 任命, 다만 이들의 任命에 있어서는 保健・家族部長官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 ⑤ 豊算等의 承認
- 理事會는 豊算, 會計報告書, 事務總長의 年次報告書를 審議하고 議決 또는 承認할 權限을 가진다.
- ⑥ 理事會는 事務總長의 金庫의 運營에 관한一般的 監督權을 가진다.

﹂. 事務總長

前述한 바와 같이 事務總長은 社會保障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理事會가 任命하는 各金庫의 執行部의 長으로서 그 주된 機能 또는 權限은 다음과 같다.

- (1) 理事會의 監督下에 金庫의 運營을 確保하며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執行한다.
- (2) 理事會에 대하여 豊算案 및 金庫運營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提出한다.
- (3) 管理部門職員 以外의 全職員에 대한 總括的인 權限을 行使한다.
- (4) 各業務部門에 대하여 業務組織을 設定한다.

2. 社會保障의 財源 (一般制度를 中心으로)

一般的으로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에서 支給되는 各種給付의 財源은 被用者와 使用者가, 또는 保險制度 또는 分野에 따라서는 使用者가 單獨으로 支拂하는 保險料(Cotisations)에 의하여 充當되고 있다.

이러한 保險料가 社會保障의 주된 財源이 되고 있으나 이밖에 附隨的으로 實質的 意味에서는 財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制度의 移轉收入과

最近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國庫支出金이 있는 바, 이러한 이 두 가지 財源은 一定制度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1974年度의 경우를 보면 保險料가 全體社會保障制度의 財源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80%이었고 一般制度의 경우 그 比率은 98%에 達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前記한 세가지 財源에 관하여 一般制度를 중심으로 하여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가. 保險料 — 一般制度 —

앞의 社會保障의 運營機構의 考察時 一般制度는 1967年의 改革에 의하여 同制度上의 保險은 內容上 4個部門으로 區分되었음을 이미 言及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4個部門은 社會保險部門, 勞動災害・職業病部門, 老齡保險部門 및 家族給與部門으로서 이들 각者에 대해서는 相異한 保險料率이 適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保險料의 算定基礎는 原則의 으로 被用者の 賃金이므로 여기서는 먼저 이러한 賃金問題에 관하여 檢討한 후에 各部門別 保險料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保險料의 算定基礎로서의 賃金

前述한 바와 같이 社會保障의 一般制度에 있어서는 自營業者가 納付하는 家族給與部門 保險料 및 自動車保險料를 별도로 하면 保險料의 算定基礎는 被用者の 賃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社會保障에 있어서의 賃金의 概念은 대단히 廣義로 把握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社會保障法典 제120조는 「勞動의 代價로서 또는 勞動에 依하여 勞動者에게 支拂되는 金錢一切를 報酬로 본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保險料의 算定基礎로 되는 賃金의 概念에는 다음의 여러가지 要素가 包含되고 있는 것이다.

- ① 嚴格한 意味의 賃金
- ② 賃金의 補填要素

⑦ 現物給與. 例컨대 食事, 住宅등 企業에 의하여 提供되고 行政命令이 規定하는 定額算入評價의 對象이 되는 것.

- ⑧ 蒂
- ⑨ 勞動에 對하여 支拂되는 手當 또는 보너스
- ⑩ 賃金의 代替物

勞動者가 勞動하지 아니하는 期間에 企業이 支拂하는 手當金額도 賃金으

로 간주되는 것으로 다음의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 ① 有給休暇手當
- ② 豫告手當
- ③ 疾病附加手當

이러한 賃金의 念에 關하여 判例는 「事業主가 그 企業에 속하고 있을理由로 하여 勞動者에게 支拂하는 金錢 또는 恩典 一切은 保險料의 算定基礎에 算入된다.」라는一般的原則를 採用하고 있다.

2) 保險料算定基礎의 最低額 및 最高額

1. 最低額

保險料算定基礎로 되는 賃金額은 當該被用者에게 適用되는 最低賃金額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을 下向할 수 없는 것이다.

2. 最高額

報酬가 每年 賃金의 上昇에 따라 行政命令으로 決定되는 一定上限을 넘는 경우에는 社會保障은 原則의으로 그 超過分은 據出의 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 이를 上限制度(plafond)라고 하는 것이다. 疾病, 出產, 廢疾 및 死亡保險의 保險料에 關하여는 部分의으로 上限이 徹廢되어 있다.

현재 이 上限額은 4,000프랑으로 되어 있다.⁽¹⁵⁾

3) 部門別保險料

社會保障의 一般制度에 있어서의 保險料는 各部門에 따라 相異한 것임은前述한 바와 같다.

1. 社會保險의(疾病, 出產, 廢疾, 死亡) 保險料

이 部門에는 相異한 性格의 다음의 두가지 保險料가 있다.

- ① 基本的으로는 賃金을 基礎로 하는 使用者 및 被用者의 保險料이다.

이 部門에서는 部分의으로는 上限이 撤廢되어 있다.

1977. 1. 1. 현재 保險料率은 다음과 같다.

(15) 이러한 上限額制度는 幹部職員, 自營業者, 企業主등의 社會保障에 대한 協調를 確保하기 위한 一種의 讓步措置로서 把握되고 있다. 然이나 同制度는 社會保障制度에 의한 所得의 垂直的 再分配機能을 沮害하는 基本的 要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企業主와 勞動組合間에 가장 심각한 對立의 촛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前者は 프랑스 社會保障制度가 尚今도 基本的으로는 社會保險의 性格을 띠우고 있다는 論據에서 同制度를 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後자는 프랑스制度는 그 現狀에도 不拘하고 理念的으로 嚴然히 社會保障制度라는 觀點에서 同制度의 撤廢를 主唱하고 있는 것이다.

① 上限內賃金에 대하여

使用者 : 10.95%

被用者 : 3%

② 上限을 넘는 賃金總額에 대하여

使用者 : 2.50%

被用者 : 1.50%

③ 自動車所有者は 이외에 新規保險料로서 自動車保險料의 3%에相當하는 追加保險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이 保險料는 1967年の改革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交通事故에 의하여 社會保障에 慈起되는 費用負擔의一部를 自動車所有者에게 負擔시키려는 것이다. 그趣旨는 納得할만한 것이나 交通事故로 慈起되는 費用과 同保險料間에 一定한 比例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現行의 保險料率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라 할 것이다.

۷. 勞動災害・職業病部門의 保險料

① 保險料는 使用者的 單獨負擔으로 되어 있다. 또한 使用者の 保險料의 額도 一律의인 것이 아닌 것으로 그것은 企業에서 勞動者가 事故를 當할 可能성이 있는 危險의 程度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이러한 算定方式은 企業主에게 勞動災害의 重大性을 認識시키고 豫防的 安全措置를 취하도록 조장하려는 데에 그 基本趣旨가 있는 것이다.

② 保險料에는 企業의 規模에 따라 各己 相異한 세가지 種類가 있다.

各保險에 適用되는 保險料率은 상당히 복雜한 方式에 의하여 算出되어 地方疾病保險金庫가 이를 決定한다.

③ 集合的 保險料率

이 集合的 保險料率은 各職業分野에 대하여 前年度의 同分野에 內在의 危險을 감안하여 前年度의 算定率에 의거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이러한 集合的 保險料率은 原則적으로 그 從業員數가 20人以下인 企業에 適用되는 것이다. 다만 前年度의 集合的 事故率이 充分히 낮은 것인 경우에는 그 從業員數가 100人以下인 企業에도 適用될 수 있다.

④ 企業別 保險料率

이 企業別保險料率은 그 活動內容에 따라서 從業員數가 300人 또는 500人以上的 企業에 適用되는 것이다. 同率은 前年度에 發生한 事故 및 職業病의

頻度에 의거하여 算出되는 것이다.

② 混合的 保險料率

이 混合的 保險料率은 前記한 두가지 保險料率을 混合한 것으로 實際로는 集合的 保險料率을 基礎로 하고 企業別 保險料率에 의하여 修正된 保險料率을 일컫는 것이다. 이 경우 企業保險率이 차지하는 比重은 關係企業의 規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混合的 保險料率은 前記한 集合的 및 企業別 保險料率의 適用이 없는 中企業에 適用되는 것이다.

③ 前述한 保險料 외에도 適切한 安全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企業에 대하여는 附加保險料를 負課할 수 있다. 이러한 附加保險料는 그를 위한 催告에도 不拘하고 一年以上 所要되는 安全措置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基本保險料의 3倍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필요한 安全措置를 講究한 企業에는 既納保險料를 還給할 수 있는 것이다.

上記한 附加保險料는 辨明의 여지가 없는 過失로 인한 事故의 發生時에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二. 老齡保險部門의 保險料

이 部門의 保險料는 上限附賃金을 基礎로 하여 負課되는 것이며 그 一部는 被用者의, 다른 一部는 使用者の 負擔으로 되어 있다.

保險料率은 다음과 같다. (1976. 9. 26. 현재)

使用者 : 7.70%

被用者 : 3.45%

三. 家族給與部門의 保險料

社會保障의 一般制度는前述한 바와 같이 同制度上의 被保險者뿐만 아니라 同營業者에 대하여도 家族給與를 支給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受給者의 二元的 構造는 保險料 문제에도 그 聯關性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① 被用者에 대한 家族給與

이 경우 保險料는 勞使雙方에 의한 據出方式에 의하지 아니하고 使用者の 單獨負擔으로 되어 있다.

保險料率은 1949年에는 16.75%이었으나 계속 減少되어 현재는 9%로 되어 있다.

② 自營業者에 대한 家族給與

이 경우는 受給者가 自由業者, 商人事業主 등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使用者가 存在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스스로가 家族給與의 財源을 確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保險料는 職業收入을 基礎로 하여 決定되는 것이며 保險料率은 收入規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나. 制度間移轉收入 및 國庫支出金

1) 制度間移轉收入

制度間移轉收入이라 함은 財政的으로 國難을 겪고 있는 一定의 保險制度에 대한 他保險制度의 財源의 移轉을 말하는 것으로 實際로는 一般制度에서의 特別制度 또는 農業制度에로의 財源의 移轉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1967年の改革은 社會保障의 各制度뿐만아니라 各制度內의 各保險部門內에 있어서도 財政的自治를 規定하고 있으므로 移轉收入의 문제는 다만 相異한 保險制度間에서만 發生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同一制度內의 保險部門間에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實제로는 적어도 一般制度에 關한 限保險部門間의 資金의 流用은 사실상 容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間移轉收入制度가 採擇된 理由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多元的 組織形態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社會保障制度에 있어 醫療 및 老齡年金에 관한 紙與費의 繼續적인 增加趨勢에 當面하여 收支의 均衡을 잃고 財政的으로 自立不能狀態에 處하게 된 制度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態가 最近 가장 심각한 것이 鎮山, 國鐵, 船員等, 社會保障의 特別制度인 것으로 이들은 共히 沿革의 早期에 形成된 것이다. 이들 制度에 있어서는 國家의 資源政策의 轉換, 또는 合理化, 機械化에 의하여 그 基礎가 되는 產業에 현저한 變化가 發生하고 被保險者數의 極端的인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年金受給者の 數는 每年增加하고 또한 年金의 紙與改善에 따라 制度의 支出은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制度는 財政的으로 거의 自立不能 상태에 處하여 있는 것으로, 이를 解決하기 위한 方法이 國庫支援이 아니고 주로 制度間의 財政的 連帶에 의한 移轉收入制度인 것이다.

이러한 移轉收入制度로 현재 損害를 받고 있는 것은 一般制度인 것이다. 그것은 1964年の豫算法 제73조는 一般制度에 대한 財政的 援助를 義務化한 바 있고, 다시 1971年豫算法 제32조 및 1972年豫算會計法 제73조는 鎮山,

國鐵, 船員 및 巴黎地下鐵公團등의 社會保障의 特別制度의 赤字를 補填하기 위한 目的으로 이를 制度에 대 한 一般制度의 援助體制가 定立된 바 있기 때문이다.

1975年의 推計值에 의하면 이를 特別制度는 總307億프랑을 移轉收入의 形式으로 一般制度로부터 援助를 받고 있다. 이는 特別制度總收入의 10.37%에相當하는 것이며 鎮山分野에 있어서는 1974年的 경우 總收入의 30.87%를 移轉收入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끝으로 言及할 것이 1974.12.24의 法律이다. 同法에 의하면 1978.1.1.까지는 모든 프랑스人에 대하여 疾病保險, 老齡保險 및 家族給與의 3部門에 있어 最低限의 保障을 實現하도록 하고 그를 위하여 各種의 制度間에 人口要因에 基한 財政的 調整도 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同法은 아직 實施되고 있지 않으나 同法이 實施되는 경우 人口要因이라는 面에서 財政的 餘裕를 가지고 있는 것은 一般制度이므로 同制度에 의한 他制度에의 移轉支出은 向後 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前記한 1974年的 法律은 이러한 一般制度에 의한 移轉支出은 國庫支出로 補償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國庫支出金

①前述한 바와 같이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財源은 原則적으로 劳使雙方이 또는 使用者가 單獨으로 負擔하는 保險料에 의하여 充當되고 있는 것이다.

然이나 주로 人口的 要因에 基因하여 이러한 自體保險料만으로는 財政의 으로 自立不能狀態에 봉착한 一定한 保險制度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特定保險制度의 財政的 赤字 문제를 解決하기 위한 주된 方法이 制度間移轉收入으로 그것은 實제로는 一般制度의 他制度에 대 한 移轉支出로 나타나고 있음은 既述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移轉收入에 의한 解決方法도 一般制度 그 自體의 財源의 限界와 관련하여 一定한 限界가 있는 것으로 이를 補完하기 위하여 實施되는 것이 國庫支出金에 의한 財政的 支援인 것이다. 이러한 國庫支出金은 아직까지는 附隨的 性格의 것이나 그 規模는 계속 增加趨勢에 있는 것이다.

다음에 이러한 國庫支出金의 實例로서 農業制度 및 一般制度에 대한 것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② 農業制度에 대한 國庫支出은 1963년에 처음 實施된 以來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同制度中 農業經營者를 위한 社會保障收入으로 充當되고 있다. 이러한 國庫支出金은 農業制度上의 社會保障給與에 관한 附屬豫算(Budget annexe des prestations sociales agricoles)으로서 國家의 特別會計豫算에 編入되어 農業經營者의 保險料收入을勘案하여 國庫支出金의 額이 國會에서 決定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財源은 農產品에 대한 間接稅, 附加價值稅 기타 直接, 間接稅의 稅收로 充當되고 있다. 參考로 1974年的 實積值을 보면 이 部門의 收入中, 保險料收入 25.75%, 目的稅收入 34.29%, 國庫補助金 13.38%, 移轉收入 23.89%로 되어 있어 自體의 保險料收入은 全體의 1/4에 不過했던 것이다.

③ 다음에 一般制度에 관하여 보면 同制度는 他制度에 대한 移轉支出을 專擔하여 온 것으로 그 支出額은 1975年的 推計值에 의하면 90億프랑에 達한 것으로 그것은 同制度의 支出總額 1,590億프랑에의 5.66%에相當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移轉支出은 一般制度에 있어 過少評價될 수는 없는 것으로 그것은 同制度 자체도 醫療 및 年金部門의 支出增加로 財政의 어려운 狀況에 處하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 一般制度는 1972年에 25億프랑, 1973年에 30億프랑, 1974年에 66億프랑의 赤字를 낸 바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赤字는 他制度에의 移轉支出을 中止하는 경우 모두 黑字로 移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 當面하여 1974年的豫算法을 定한 1973. 9. 24.의 法律은 最初로 一般制度에 대한 國庫支出을 定하였던 것이다. 그 內容은 1974年的 酒類稅의 稅收額에相當하는 國家資金을 一般制度를 위하여 支出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從來의 一般制度의 財政構造에 대한 커다란 修正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1974年에 9.05億프랑, 1975年에 39.8億프랑의 國庫支出이 행하여졌던 것이다.

맺 는 말

이상으로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에 관한 考察을 마친 셈이겠으나, 끝으로 結論에 대신하여 本稿의 性格 내지는 未備點에 관하여 몇마디만 附言하고 本稿를 모두 마치려고 한다.

우선 本稿에서는 그 考察範圍를 一般制度에 局限하였다. 然이나, 프랑스 社會保障制度는 歷史的, 社會的 諸要因에 基因하여 一般制度外에도 特別制度, 自治制度 및 農業制度가 並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本稿에서는 一般制度에 관한 考察에 있어서는 주로 同制度에 의한 諸給與에 重點을 두고 考察하고 同制度에 의한 福祉活動 또는 疾病勞動災害 등의豫防措置 등은 그 檢討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끝으로 本稿에서는 公的 扶助에 관해서도 序頭에서 약간 言及했을 뿐 具體的 內容에 관한 考察은 省略하였다. 以上에 열거한 세가지 事項이 아직도 本稿의 가장 큰 未備點이 아닐까 한다. 물론 以外에도 社會保障에 대한 行政權의 監督, 諸運營機構間의 調整 문제, 保險料의 徵收, 任意保險, 社會保障에 관련된 爭訟問題 등 主要한 考察對象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諸問題點, 그 중에서도 특히 앞에 열거한 세가지 事項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本稿의 考察對象에서 除外된 理由는, 결국은 制限된 紙面에 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筆者는 장차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한번 考察할 機會를 가지게 될 것인 바, 그때에 本稿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보다 充實한 내용의 글이 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임을 다짐하여 둔다.